IV.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
- 2.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 3. 임시정부로의 통일전선 형성

IV.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

1) 한국독립당의 창당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는 1940년 重慶에 정착하면서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며 전시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1932년 상해를 떠난 이래 임시정부는 중국대륙 각지로 소재지를 옮겨다녀야 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는 피난길이나 다름없었다. 임시정부가 전란으로부터 비교적 안정된 지역에 정착한 곳이 중경이었다. 중경은 당시 중국 국민당정부의 임시수도였다. 이곳에 정착하면서 임시정부는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임시정부가 서둘러 추진하였던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는 민족주의 세력을 통일하여 한국독립당을 창당한 일이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민족주의 세력은 크게 3당으로 나뉘어 있었다. 金九의 한국국민당, 趙素昻・洪震 등이 주도하고 있던 한국독립당(재건), 李靑天・崔東旿 등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중심을 이룬 조선혁명당이 그것이다. 이들 3당은 1937년 8월 임시정부를 옹호,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하여 연합을 이루고 있었지만, 각기 독자적인 조직과 세력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었다.1)

임시정부는 이들 3당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3당 사이에 통합에 대한 문제는 이미 長沙에 있을 때 논의된 적이 있었다. 1938년 5월 남목청에서 3당 대

¹⁾ 韓詩俊,〈重慶韓國獨立黨의 성립배경 및 과정〉(《尹炳奭教授華甲紀念 韓國近代史論叢》, 지식산업사, 1990), 954쪽.

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을 위한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혁명당 당원인 李雲煥이 회의장에 들어와 김구·이청천·玄益哲 등을 권총으로 저격한 이른바 長沙事件이 발생하면서,2) 3당 통합을 위한 시도는 중단되고 말았다.

중단되었던 3당 통합이 다시 추진된 것은 기강에서 개최된 7당 통일회의가 결렬된 후였다. 7당 통일회의는 좌우익 독립운동 세력들이 1939년 綦江에 집결하게 되면서, 우익진영의 3당과 좌익진영의 4당 사이에 개최된 통일운동이었다. 1939년 5월 김구와 金元鳳이 〈同志同胞에게 보내는 公開信〉을 통해, 좌우익진영의 정당・단체들을 해소하고 單一黨을 조직할 것에 합의하였다.3이에 따라 8월 27일부터 좌우익 진영의 7개 정당・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통일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방법과 독립운동 최고기구 문제, 즉 임시정부냐 아니면 새로이 결성될 단일당을 최고기구로 할 것이냐 하는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좌우익 세력의 통일운동이 결렬되자, 임시정부는 우익진영 3당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3당의 통합분위기는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었다. 7당 통일회의가 결렬된 직후인 1939년 10월 2일 3당은 대표를 선정하여 통합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국민당의 趙琬九・金朋濬・嚴恒變, 재건한국독립당의홍진・조소앙・趙時元, 조선혁명당의 이청천・최동오・安勳 등이 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기강에서 光復陣線遠東三黨統一代表會議를 개최한 것이다.4)

임시정부는 3당 통합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1939년 11월 국 무회의에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하에 이를 위한 구체적 계 획으로〈獨立運動方略〉을 발표하면서, 3당 통합에 대한 기대와 통합의 연내 실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광복진선 소속단체는 대한민국의 기본세력이 되어 있고 수3년래로 통일운동을 위시하여 일체 행동에 분투하여 왔으므로 白黨을 해소하고 新黨을 창립함에

²⁾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1975). 682~683쪽.

³⁾ 대한매일신보사, 《白凡金九全集》 6(1999), 25~40쪽.

^{4) 〈}光復陣線遠東三黨統一代表會議經過大略〉(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韓國獨立運動史資料》趙素昂篇 4, 1997), 15~30쪽.

하등 支節이 없을 뿐만 아니라, 3당의 對立局面을 統一局面으로 전환하게 함은 黨·政·軍·外·宣·財 등 각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임시정부 는 있는 역량을 기울여 금년 이내로 3당 통일의 숙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 (三均學會,《素昂先生文集》상, 횃불사, 1979, 136쪽;金正明,《朝鮮獨立運動》 2, 1967, 700쪽).

3당의 통합이 임시정부가 향후 추진해 나갈 독립운동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3당이 연내에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3당 통합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지만, 3당 통합은 연내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3당 통합을 위한 대표회의는 해를 넘겨, 1940년에 들어와 다시 개최되었다. 1940년 3월 24일 3당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3당 통합을 위한 제2차대표대회가 소집된 것이다. 이 회의는 5월 8일까지 계속되었고, 여기서 당명은 韓國獨立黨으로, 그리고 黨義・黨綱・黨策・黨憲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신당창립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면서, 5월 8일 3당의 해체와 신당의 창립을 알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3당해체선언〉을 발표하였다.

新黨의 前身이었던 3당은 이제부터 다시 존재할 조건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각기 解消될 것을 전제로 하고 신당 창립에 착수하였다. 과거 3당의 모든 사업과 혁혁한 역사를 이로 쫓아 신당이 완전히 繼承匯合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당은 보다 큰 권위와 보다 많은 인원, 보다 광대한 聲勢, 보다 高級的 지위를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을 보다 유력하게 추진케 할 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며 3당 자신은 이에 해소를 선언한다(삼균학회,〈三黨解體宣言〉,《素昂先生文集》상, 264쪽).

3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이었다. 3당의 세력들이 신당에 결집됨으로써 신당은 큰 권위, 많은 인원, 광대한 성세, 고급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보다 유력한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우익세력 3당의 통합과 신당의 창당이 선언되었다. 5월 9일 한국독립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 3당의 과거 조직을 공동 해소하고 통일을 이룬 새로운 한국독립당을 창당한다"는 내용의〈韓國獨立黨創立宣言〉을 발표한 것이다.5) 이로써 우익진영 3당의 세력이 통일을 이룬 새로운 한국독립당이 창당되었다. 당의 조직은 중앙집행위원장 제를 채택하였고, 다음과 같은 간부를 선출하여 당의 조직을 갖추었다.

중앙집행위원장: 金 九

そいるが引き、洪 震・趙素昻・趙時元・李青天・金學奎・柳東説・安 勳・宋秉 ・ 蘇恒燮・金朋濬・楊 墨・曺成煥・車利錫・李復源

중앙감찰위원장: 李東寧

중앙감찰위원: 李始榮·公震遠·金毅漢(金九 저,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 개, 1997, 381쪽).

한국독립당이 창당되면서 우익세력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또한 임시정부로 결집하게 되었다.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의 여당으로서 임시정부를 옹호, 유지하는 기초세력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1930년대 중반 이래 한국국민당을 기초세력으로 유지, 운영되었던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재건)과 조선혁명당 세력을 결집시켜 보다 확대된 세력기반을 갖게 되었다.

2) 정부 조직의 확대와 개편

1930년대 중반 이래 임시정부는 한국국민당에 의해 유지,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국민당은 1935년 민족혁명당의 결성으로 임시정부가 무정부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김구가 주도하여 결성한 정당이었다. 김구는 이를 기반으로 임시정부의 무정부상태를 수습하였고, 이후 임시정부는 한국국민당의 주도하에 유지, 운영되고 있었다.6) 임시정부는 기강에 도착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우익진영 3당의 통합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조직과 진용을 확대하는 작업도 추진하였다.

⁵⁾ 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資料 3(1968), 404~406等. 秋憲樹、《資料韓國獨立運動》2(연세대 출판부, 1972), 136~138等.

⁶⁾ 韓詩俊, 〈후기 임시정부의 위상 강화와 金九〉(《도산사상연구》4, 도산사상연구회, 1997), 173~174쪽.

정부의 조직과 진용을 확대하는 작업은 한국독립당(재건)과 조선혁명당 세력을 임시정부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그 동안 임시정부는 한국국민당 주도하에 운영되어 왔다. 1937년 8월 한국독립당(재건)과 조선혁명당이임시정부의 옹호, 유지를 전제로 한국국민당과 함께 광복진선으로 연합을 이루었지만, 임시정부의 조직과 운영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3당통합을 추진하면서 한국독립당(재건)과 조선혁명당의 인사들을 임시정부에참여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독립당(재건)과 조선혁명당 인사들의 임시정부 참여는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1939년 10월 3일 기강에서 제31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12월 5일까지 계속된 의정원 회의에서 임시의정원 의원에 대한 보결선거를 실시하고 임기만료된 국무위원을 새로이 선출하였는데, 한국독립당(재건)과 조선혁명당의 인사들이 의정원 의원과 국무위원에 선출된 것이다.

제31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소집되기 직전까지 임시의정원은 주로 한국국민당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재적의원수는 17명이었다. 헌법에 규정된의정원 의원수가 57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시 의정원 의원은 3분의 1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제31회 의정원 회의에서는 모두 18명의 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독립당(재건)과 조선혁명당의 인사들이 의원으로 선출된 것이다. 당시의 재적의원과 補選의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적의원: 조완구·조소앙·이시영·조성환·엄항섭·민병길·안공근·안경근· 왕중랑·차이석·김붕준·박창세·양 묵·문일민·송병조·이동녕· 김 구

보선의원: 조시원·홍 진·황학수·안 훈·신 환·이상만·손일민·유동열· 최동오·신공제·이복원·방순희·공진원·이흥관·이청천·박찬익· 이준식·김학규

⁷⁾ 헌법에 규정된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함경도・ 평안도・중령・아령에서 각각 6인씩, 그리고 강원도・황해도・미주에서 각각 3인씩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韓詩俊 편,《大韓民國臨時政府法令集》, 국가보훈 처, 1999, 56쪽).

재적의원 17명 가운데 조소앙만 한국독립당(재건) 당원이었고, 나머지 의원은 모두 한국국민당 당원이었다. 여기에 조시원·홍진을 비롯한 한국독립당당원과 최동오·이청천 등 조선혁명당 당원들이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이들이 임시의정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참여로 임시의정원은 크게확대되었다. 18명의 의원이 선출됨으로써, 의정원 의원수가 종래 두 배가 넘는 35명이 된 것이다.

국무위원과 정부의 조직에도 한국독립당(재건)과 조선혁명당 인사들을 선출하였다. 의정원 회의에서는 10월 23일 임기만료된 국무위원을 선임하면서, 국무위원의 수를 〈임시약헌〉에 규정된 최대수 11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국민당의 이동녕・김구・이시영・조성환・송병조・차이석・조완구와 더불어, 한국독립당(재건)의 홍진・조소앙, 조선혁명당의 이청천・유동열을 각각 국무위원으로 선출한 것이다.8) 이로써 한국독립당(재건)과 조선혁명당의 인사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은 3당이 7:2:2의 비율을 이루었다.

국무위원을 선출한 후 정부의 조직도 정비하였다. 선출된 국무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25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임시정부의 조직을 새로이 구성한 것이다. 정부의 부서는 내무·외무·군무·참모·법무·재무의 6부를 두기로 하고, 각 부서의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9)

主 席:李東寧

内務長:洪 震,外務長:趙素昻,軍務長:李靑天

參謀長:柳東說, 法務長:李始榮, 財務長:金 九, 秘書長:車利錫

주석을 비롯한 6개 부서로 정부조직을 정비한 것이다. 그리고 주석과 각부서의 책임자는 3당의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주석 이동녕을 비롯하여 이시영·김구·차이석은 한국국민당, 홍진과 조소앙은 한국독립당(재건), 이청천과 유동열은 조선혁명당 소속이었다. 한국국민당 주도하에 운영되던 임시정

⁸⁾ 국회도서관,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1974), 249쪽.

^{9)《}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제65호, 1940년 2월 1일(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昻篇 3, 1997, 167쪽).

부가 '3당 연립내각'을 구성한 것이다.

기강에서 정부조직을 확대 정비한 임시정부는 중경에 정착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임시정부가 기강에서 중경으로 옮긴 것은 1940년 9월이었다. 중경은 중국 국민당정부가 임시수도로 정하고 있던 곳으로, 중일전쟁의 戰區로부터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었다.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였다.

임시정부가 중경에 정착하면서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행정부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임시정부가 중경에 정착하던 당시에는 중일전쟁이 중국대륙 각지로 확산되어 있었고,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임시정부는 뒤에서 언급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는 등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조직체제는 국무위원제로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1927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國務委員制를 채택하고 있었다. 국무위원제는 행정수반이 없었다. 국무회의에서 선출하는 主席이 있었으나, 이는 국무위원들이 교대하여 맡는 회의 주관자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국무위원회는 의정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의정원에 비해 행정부의 지위가 크게 약화되어 있었다. 일종의 관리정부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10)

임시정부는 정부의 조직을 행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로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행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의〈大韓民國臨時約憲改正案〉을 마련하여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였고, 이 안은 1940년 10월 8일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통과되었다.11)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당시〈대한민국임시헌장〉이 제정된 이래 5차헌법이었고, 전시체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된 헌법이었다.

¹⁰⁾ 趙東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이념〉(《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국가보훈처, 1999), 675쪽.

^{11)《}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1940년 10월 9일, 號外(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昂篇 3, 174쪽).

개정된〈임시약헌〉의 핵심은 종전의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전환한 것이었다. 종래 국무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국무위원이 교대하여 맡았던 주석을 임시의정원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주석은 임시정부를 대표하며 국군의 統帥權을 행사하는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였다.12) 주석은 곧 국가원수와 같은 존재로서, 주석이 정부의 행정권을 장악하여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김구를 주석으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새로운 중경시대를 열게 되었다. 중경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세력이 통일을 이룬 한국독립당을 기초세력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조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헌법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바꾸어, 행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3) 건국강령의 제정 반포

임시정부는 중경에 정착한 이후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여 세력기반을 확고 히 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강력한 지도체제를 확립하면서, 독립운동 최고기 구로서의 위상을 되찾아 갔다. 이러한 체제정비와 더불어 임시정부는 광복 후 민족국가건설에 대한 총체적 계획으로〈大韓民國建國綱領〉을 제정·반포 하였다.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1919년 수립당시의 헌법인〈大韓民國臨時憲章〉을 통해서였다.〈임시헌장〉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란 것이 그것이었다. 이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이념이자 목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원칙만 천명하였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시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민족국가 건설계획을 밝힌 것은 1931년 4월〈大韓 民國臨時政府宣言〉을 통해서였다. 이는 그해 5월 南京에서 개최된 중국 國民

¹²⁾ 韓詩俊 편, 《大韓民國臨時政府法令集》(국가보훈처, 1999), 65쪽.

會議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여기서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상해)이 추구하는 建國原則의 大綱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民族均等主義란 것은 사람과 사람이 利權을 고루히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으로 고루히 할 것인가. 普選制로써 政權을 고루히 하며, 國有로써 利權을 고루히 하고, 公費로써 學權을 고루히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民族自決의 권리를 보장하여 民族과 민족, 國家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가지런히 한다. 이와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特權階級이 곧 消亡하고 소수민족이 그 侵凌을 免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고루히 하며 … (국사편찬위원회,《韓國獨立運動史》資料 2, 1968, 216~220쪽; 국회도서관,《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76, 62~66쪽).

개략적이긴 하지만, 임시정부가 건설할 민족국가의 대강을 밝힌 것이다. 민족균등주의에 입각하여 특권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균등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고, 그 방안으로 보통선거제・국유제・공비교육제를 통해 政權(정치)・利 權(경제)・學權(교육)의 균등을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독립당(상해)의 政綱・政策을 구체화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임시정부 인사들은 1930년 1월 정부를 옹호, 유지하기 위한 기초세력으로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였고, 한국독립당의 정강・정책은 三均主義를 채택하고 있었다.13) 임시정부가 천명한 건국원칙도 삼균주의에 기초한 것이었다. 삼균주의는 이후 김구의 한국국민당을 비롯하여 조소앙의 한국독립당(재건), 그리고 좌익진영의 조선민족혁명당 등 1930년대 정당들에 의해 수용되어 갔다. 삼균주의가 좌우익 진영의 공통된 독립운동 이념으로 정립되고 있었던 것이다.14)

중경에 정착하여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정비한 임시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더욱 체계화시켜 광복 후 민족국가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립,〈大韓民國建國綱領〉이란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건국강령은 삼균주의의 창안자로 알려진 조소앙이 기초하였고, 1941년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¹³⁾ 韓詩俊,〈上海韓國獨立黨 研究〉(《龍巖車文燮教授華甲紀念 史學論叢》, 신서원, 1989), 617~619等.

¹⁴⁾ 姜萬吉, 〈民族運動・三均主義・趙素昻〉(《趙素昻》, 한길사, 1982), 317~321쪽.

거쳐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되었다.15)

〈건국강령〉은 總綱・復國・建國의 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강은 민족의 과거 내력과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제2장 복국은 독립운동의 단계와 임무를 규정한 것이다.〈건국강령〉의 핵심은 제3장 건국에 있다. 여기에는 광복 후 건설할 국가의 政體는 민주공화국이고, 균등사회를 실현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들을 정리하였다. 내용은 크게 정치・경제・교육의 세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어떤 한 정권이나 특권계급에 의한 독재를 철저히 배격하여 정치적 균등을 실현한다고 하였다.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보통선거제를 실시하고 참정권을 부여하되, 다만 적에게 附和한 자나 독립운동 방해자 등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두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중앙정부는 국무회의가 최고 행정기관으로 국무를 집행한다고 하면서, 행정분담을 위해 내무·외무·군무·법무·재무·교통·실업·교육의 8부로 구성한다고 하였다. 지방에는 각 지방행정단위에 따른 地方政府와 議會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경제분야는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한다는 전제하에, 생산의 국가적지도 및 계획조정, 그리고 분배의 합리성을 통해 경제균등을 실현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적의 官公私有地는 물론이고, 附敵者의 일체 소유자본 및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토지는 自力自耕人에게 분배한다고 하면서, 그 순서는 고용농·자작농·소지주농 등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생산기관 역시 국유를 원칙으로하되, 소규모 및 중소기업은 私營으로도 한다고 하였다.

교육분야는 民族正氣를 발양하며 국민도덕·생활기능·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완전한 국민을 양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國費義務敎育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6세에서 12세까지의 초등교육은 물론이고, 12세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일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¹⁵⁾ 韓詩俊、〈大韓民國臨時政府의 光復享 民族國家建設論〉(《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1989), 527쪽.

지방에는 인구·교통 등의 형편에 따라 교육기관을 시설하되, 최소한 1읍 1 면에 5개 소학교와 2개 중학교를, 1군 1도에 2개 전문학교를, 1도에 1개 대학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교과서의 편집·발행 등은 국영으로 하고,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분급할 것이라 하고 있다.

〈건국강령〉은 한마디로,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상을 제시한 것으로, 개인이나 특정계급에 의한 독재를 철저히 배격하는 민주공화국을 건 설하며, 정치·경제·교육적으로 국민전체가 균등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균등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국가가 지향할 최고 목 적은 민족전체의 발전과 행복을 실현하는데 두었다.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제정·반포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임시정부로 총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전시체제를 갖추면서 무엇보다도 독립운동 역량을 임시정부로 집중시키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공통적인 독립운동의 목표와 이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의도는 1942년〈3·1절기념선언〉을 발표하면서,〈건국강령〉을 제정·공포하게 된 이유를 9개항으로 설명한데서 잘나타나 있다.16) 그 핵심은 전민족 최대다수의 공동요구에 부응하는 하나의독립운동 지도이념을 확립하고, 이 기치하에 민족의 총역량을 집결하여 광복을 실현하고자〈건국강령〉을 제정·반포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임시정부는 각종 선언문을 통해〈건국강령〉을 선전하는 한편,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의결집을 촉구하였다.

또 하나는 임시정부의 강력한 지도이념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이나 임시의정원 의원들에게〈건국강령〉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하였다. 한국광복군〈公約〉과〈誓約文〉에 "한국광복군의 군인 될 자는 건국강령과 광복군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主義를 軍내외에 선전하고 조직하지못함"(공약 제2조)이라 한 것이나, 광복군들에게 "건국강령을 절실히 취행하겠음"을 서약토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17) 의정원 의원들에게도〈건국강령〉의

¹⁶⁾ 臨時政府宣傳委員會,《韓國獨立運動文類》(1942), 52~54\.

^{17)《}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제72호, 1941년 12월 8일,〈韓國光復軍公約〉·〈韓國光復軍誓約文〉.

준수를 요구하였다. 제34차 의정원회의 때 李光濟의원이 "선거시 登記證上에 건국강령 준수여부를 강박적으로 요구한 것은 정부의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18)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건국강령〉은 광복 후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임시정부가〈건국강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민족 최대 다수의 공동요구에 부응하는 독립운동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 기치하에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총결집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韓詩俊〉

2.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1) 광복군의 창설

임시정부가 중경에 정착할 무렵에는 중일전쟁이 중국대륙 전체로 확산되어 있었고, 유럽에서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러한 국제정세변화에 따라 임시정부는 대일전쟁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고, 이를 위해 전시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임시정부가 전시태세를 갖추기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 韓國光復軍(이하 광복군으로 약칭)의 창설이었다.

임시정부가 광복군의 창설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39년 기강에 도착한 직후부터였다. 임시정부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군사위 원회를 설치하고, 초급장교 양성과 1개 연대 규모의 군대를 편성한다는 군 사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1) 그러나 일본군의 점령지역이 확대되면서 임

¹⁸⁾ 국회도서관,《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1974), 292쪽.

¹⁾ 군사위원회는 '속성 군관학교를 설립하여 최단 기간 내에 초급장교 200명을 양성하고, 기본군대로 1개 연대를 편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사업비로 37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당시 37만 원이란 금액은 임시정부 1년 예산의 65%에 해당되는 것으로 임시정부가 군사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국회도서관,《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247쪽).

시정부는 중국대륙 여러 곳으로 옮겨다녀야 했고. 계획한 군사활동은 제대 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기강에 도착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광복군의 창설은 한국독립당에 의해 계획, 추진되었다. 기강에서 3당이 통 합을 추진하면서 광복군 창설을 주요 현안으로 결정하였다. 당이 추진해 갈 장단기 정책을 논의하면서 "國防軍을 편성하기 위해 국민의무병역을 실시한 다"(당강 6조), "장교 및 무장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광복군을 편성할 것"(당책 3조)이라 하여.2) 광복군 편성을 한국독립당이 추진해 나갈 당면 목표의 하나 로 결정한 것이다.

광복군 창설 준비는 크게 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병력을 모집하 는 일이었다. 당시 임시정부에는 군대를 편성할 만한 인적 자원이 없었다. 1920년대 이래 黃埔軍官學校・洛陽軍官學校 등을 비롯한 각종 군관학교를 통해 양성한 군사인재들이 있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군에 복무하고 있었다. 그리고 李靑天・李範奭・金學奎 등과 같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 군들이 중국관내로 이동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하였지만, 이들은 대부분 군사 간부들이었다. 실제 병력이 될만한 인적 기반이 없었던 것이다.

임시정부가 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일본군 점령지역 에 이주해 있던 한인청년들을 모집하는 일이었다. 당시 일본군 점령지역인 北京・天津・石家莊 등을 비롯하여 화북지역에는 약 20만에 달하는 한인들 이 이주해 있었다.3) 이들을 대상으로 병력을 모집한다는 것이 임시정부의 방안이었다. 1939년 7월 국무회의에서는 일본군 점령지역에 들어가 한인청년 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구로 軍事特派團을 구성하였다. 曺成煥 을 단장으로 한 군사특파단은 대부분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약하였던 군사 간부들과 중국의 군관학교 출신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그해 11월 陝西省 西安으로 파견되었다. 서안은 화북지역과 최전선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특파원들을 일본군 점령지역으로 들여보내 한인청년 들을 모집하고자 한 것이다.

²⁾ 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資料3(1968), 405\.

³⁾ 葛赤峰、〈朝鮮革命記〉(秋憲樹、《資料韓國獨立運動》1), 114쪽, 韓志成,〈目前環境與朝鮮義勇隊今後工作〉(《朝鮮義勇隊》제37기, 1940. 5).

서안에 도착한 군사특파단은 화북지역의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병력을 모집하는 招募活動을 시작하였다. 1940년 6월 李俊植을 주임으로 하여 盧泰俊・安椿生 등의 단원들이 山西省으로 진출하였고, 이들은 중국군 第2戰區 사령관인 閻錫山의 지원을 받아 일본군 제41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臨汾・克難坡 등지를 중심으로 초모활동에 들어갔다.4) 초모활동은 일종의 비밀지하 공작이었다. 단원들이 비밀리에 일본군 점령지역으로 들어가 그곳에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그곳에 있는 한인청년들을 포섭하여 오는 일이었다. 이러한 초모활동을 통해 병력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재정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재정의 마련은 주로 미주동포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임시정부는 광복군 창설을 추진하면서 1940년 2월 외무부장 명의로 大韓人國民會를 비롯한 미주지역 여러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5)

임시정부의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미주동포들은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국민회의 기관지인《新韓民報》는 "광복군 조직은 3·1운동 이후 처음 있는 큰 사건"이라며 광복군 창설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힘이 있으면 힘을, 돈이 있으면 돈을 내라"고 하면서,6) 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1940 년 5월 한국독립당이 창당된 후 하와이 愛國團과 團合會가 한국독립당 하와 이 지부로 개편되면서, 이들 단체는 그 조례에 "경제적 책임을 부담함"이라 하여?) 광복군 창설에 대한 경제적 후원을 자임하기도 하였다.

셋째는 중국정부를 대상으로 광복군 창설에 대한 인준과 지원교섭을 전개하였다. 중국 영토내에서 군대를 편성하는 데는 중국정부의 승인과 양해를 얻어야 했고, 또 광복군 편성과 운영에 많은 경비가 소요됨에 따라 중국측에 재정적 원조를 요청할 필요도 있었다. 중국과의 교섭은 주로 중국국민당의한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광복군 편성이 중국의 抗日戰에 유익하다는 것을

^{4) 〈1942}년 軍務部 軍事報告〉(국회도서관,《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776쪽.

^{5) 《}新韓民報》, 1940년 2월 29일,

^{6) 《}新韓民報》, 1940년 6월 20일.

⁷⁾ 金元容, 《在美韓人50年史》(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8, 1976, 734~735쪽).

강조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김구는 朱家驊를 비롯한 중국측 인사들에게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편성하여 대일전을 수행하고, 일본군에 있는 韓籍士兵들을 빼내면 敵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화북을 안정시키려면 먼저 東北을 수복해야 하고, 동북을 수복하려면 한국독립을 원조해야 한다"고하면서,8) 광복군의 창설과 이에 대한 원조를 교섭하였다.

이러한 교섭은 중국의 한국담당자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주가화·徐恩曾·康澤 등 한국담당자들 사이에서 오고간 공함들에서 "한적사병을 책동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것은 직접 우리 나라의 抗日戰爭에 유익할 것"이라는 것과 이를 위해 임시정부를 원조해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던 것이다.9) 한국담당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蔣介石에게보고하였고, 장개석은 이를 인준하였다. 한국담당 책임자인 주가화는 "한국의여러 정당이 통일되기 전이라도 저들로 하여금 즉시 공작을 전개하도록 해주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해 장개석은 중국 군사위원회 참모총장인 何應欽과 접촉하여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10)

임시정부는 광복군 창설계획서를 작성하여 중국정부에 제출하였다. 1940년 5월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 김구 명의로〈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을 주가화를 통해 장개석에게 제출한 것이다.11) 이 계획대강의 핵심은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편성하여 韓中聯合軍으로 중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이고, 중국정부에 광복군 창설에 대한 인준과 재정적 원조를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장개석은 이러한 계획을 승인하였다. 5월 중순 "한국광복군이 중국항전에 참가한다"는 전제하에 광복군 창설을 승인한다고 하면서, 중국 군사

^{8) 1940}년 2월 25일자로 徐恩曾이 朱家驊에게 보낸 공함(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 所,《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대만, 1988), 206~207쪽.

^{9) 1940}년 2월 21일자로 康澤이 徐恩曾에 보낸 공함(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國 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205쪽.

¹⁹⁴⁰년 2월 25일자로 徐恩曾이 朱家驊에게 보낸 공함(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 所、《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206~207等.

^{10) 1940}년 3월 2일자로 朱家驊가 蔣介石에게 보낸 공함(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 所,《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209\.

^{11) 〈}韓國光復軍成立經過事實〉(《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昻篇 4,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326쪽.

위원회 軍政部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12) 이로써 광복군 창설계획은 중국 최고 영수인 장개석의 비준을 얻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는 내부적으로 광복군 창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만주에서 독립군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이청천·유동열·이범석·김학규 등을 중심으로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들로 하여금 광복군 창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우선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만주독립군 출신의 군사간부들과 중국의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군에 복무하고 있는 한인청년들을 소집하여 총사령부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1년 이내에 3개 사단을 편성한다는 부대편성 방안을 마련하였다.[3]

광복군 창설 준비가 완료되자, 임시정부는 광복군 창설을 대내외에 공포하였다. 1940년 9월 15일 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 김구명의로 발표한〈한국광복군선언문〉이 그것이다.14) 이 선언을 통해 임시정부는 9월 17일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리고 1940년 9월 17일 重慶의 嘉陵賓館에서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임시의정원을 비롯하여 중국측 인사와 각국 외교사절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광복군총사령부성립전례식을 거행하였다.15) 총사령부성립전례식이 곧 한국광복군창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광복군은 지휘부인 총사령부를 구성하여 창설된 것이고, 이후 병력을 모집하여 단위부대로 支隊를 편성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 창설 직후 광복군은 총사령부와 3개 지대를 편성하였다. 총사령부는 총사령 이청천, 참모장 이범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공진원, 제3지대장 김학규 등이 임명되어 단위부대 편제를 갖추었다. 당시 총사령부의 간부와지대장들은 모두 만주지역에서 독립군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군사간부들로서, 독립군 출신들을 근간으로 하여 광복군을 창설한 것이다.

^{12) 〈}韓國光復軍成立經過事實〉: 1940년 5월 18일자로 朱家驛가 金九에게 보낸 공 함(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6), 653~654쪽.

¹³⁾ 韓詩俊, 《韓國光復軍研究》(일조각, 1993), 86~87쪽.

¹⁴⁾ 대한매일신보사, 《白凡金九全集》 6, 294쪽.

¹⁵⁾ 한시준, 앞의 책, 89~90쪽.

2) 중국관내 무장세력의 광복군 편입

(1)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편입

광복군이 창설되기 이전에, 중국관내 지역에서 결성되어 활동하던 무장세력들이 있었다. 韓國靑年戰地工作隊(이하 전지공작대)와 朝鮮義勇隊가 그것이다. 이들 무장세력은 광복군이 창설된 후, 각기 다른 과정을 거쳐 광복군에 편입하였다. 전지공작대의 편입이 먼저 이루어졌다.

전지공작대는 무정부주의계열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무장세력이다. 1939년 중국관내 독립운동 세력들이 기강에 집결하였을 때, 그 동안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무정부주의계열의 청년들도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군에 복무하거나 무정부주의자연맹에서 활동하던 羅月煥·李何有·朴基成 등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1939년 11월 11일 重慶에서 대원 30여 명이 나월환을 대장으로 하여 전지공작대를 결성하였다.16)

전지공작대는 결성 직후 섬서성 서안으로 이동하였다. 중국인 아나키스트의 소개로 서안에 있던 중국 제34집단군 사령관 胡宗南과 연계를 맺고, 대원들이 모두 서안으로 이동한 것이다. 서안으로 이동한 전지공작대는 호종남의 지원과 협조를 받게 되었다. 전지공작대 대원들은 제34집단군에서 운영하는 중앙전시간부훈련단 제4단에 한국청년특별훈련반으로 입교, 3개월 과정의 군사훈련을 받고 중국군과 함께 활동하였다.17)

전지공작대는 중국 제34집단군의 지원을 받아 초모활동을 전개하면서 세력을 확대하였다. 1940년 5월부터 金東洙・李海平 등의 대원들이 제34집단군 太行山 유격대에 배속되어, 일본군 점령지역에 들어가 한인청년들을 대상으로 병력을 모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초모활동은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일본군 제36사단의 주둔지인 潞安縣을 중심으로 新鄉・焦作・

¹⁶⁾ 李在賢、〈韓國光復軍第2支隊의 太行山敵後工作〉(《光復》96, 1991년 6월 15일).

¹⁷⁾ 위와 같음.

修武 등지에서 초모활동을 전개하였고, 1940년 말 약 100여 명에 달하는 대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18)

이와 같이 전지공작대가 서안을 거점으로 적후방에서 초모활동을 전개하며 세력을 확대하고 있을 무렵,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광복군을 창설한 임시정부에서는 전지공작대를 광복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섭을 전개하였던 것 같다. 그 과정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장인 나월환을 중경으로 불러 전지공작대의 포섭을 시도하였다고 한다.19)

결국 전지공작대는 광복군으로 편입하였다. 전지공작대에서는 "우리의 軍事力量을 國軍인 광복군에 집중하여 그를 健全發展시키는 데서만 우리의 혁명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20) 광복군 편입을 결정한 것이다. 전지공작대의 광복군 편입은 1941년 1월에 이루어졌다. 1월 1일 新年 團拜式이 끝난 후, 서안시내에 있는 전지공작대 본부에서 임시정부 군무부장 曺成煥과서안총사령부 총사령 대리 黃學秀를 비롯하여, 광복군 총사령부 간부와 전지공작대 대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5지대 성립식을 거행하였다.21) 전지공작대는 광복군에 편입, 제5지대로 편제되었다.

전지공작대의 편입과 이에 따른 제5지대의 편성은 창설 초기 광복군이 거둔 가장 커다란 성과였다. 100여 명의 대원을 확보하고 있던 전지공작대가 광복군에 편입됨으로써 광복군의 병력이 크게 증강된 것이다. 그리고 제5지대가 성립됨으로써 광복군은 창설 초기에 단위부대로 4개 지대를 갖추게 되었다.

(2) 조선의용대의 편입

전지공작대에 이어 朝鮮義勇隊도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조선의용대는 1938 년 10월 漢口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한 무장조직이었다. 조선민족전선

¹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6, 229쪽.

¹⁹⁾ 鄭華岩,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자유문고, 1982), 217쪽.

²⁰⁾ 笑 鵬, 〈中國西北으로 猛進하는 韓國光復軍의 새로운 動態〉(《光復》창간호, 1941년 2월).

연맹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익진영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한 후, 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혁명자연맹·조선청년전위동맹이 연합을 이룬 좌익진영의 연합체였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임시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연맹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던 金元鳳을 비롯하여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 義 烈團과 黃埔軍官學校를 통해, 가까이는 朝鮮革命幹部學校와 星子軍官學校를 통해 양성된 군사간부들이었다. 민족전선연맹은 이를 기반으로 1938년 10월 10일 김원봉을 대장으로 한 조선의용대를 결성하였다. 조선의용대는 중국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군사조직으로, 창립 당시 100여 명의 규모였고, 2개區隊로 편제되었다.²²⁾

창설 직후부터 조선의용대는 중국 군사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중국군과함께 활동하였다. 대원들은 제1구대가 중국군 제9전구사령부로 배속된 이래, 제1전구·제5전구 등을 비롯하여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 각 戰區에배속되었다. 중국전선에 배속된 의용대 대원들은 중국군과함께 대일전쟁을수행하였다.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수 있었던 대원들은 陣地宣傳과遊擊宣傳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고, 鄂北會戰을 비롯하여 일본군과 벌어진각종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

중국군과 함께 대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조선의용대의 병력은 크게 증강되었다. 중국에 나와 있던 한인청년들이 참가해오기도 하였고, 중국군에 포로된 한적사병들을 인수받아 이들을 훈련시켜 대원으로 편입시킨 경우도 적지않았다. 이로써 창설 당시 100여 명의 대원이었던 조선의용대는 1940년 2월에 이르러 대원수가 약 330여 명에 달하게 되었고, 조직도 대본부와 2개 구대에서 대본부를 비롯하여 3개 지대로 편성되었다. 23) 결성 이후 1년여 만에 대원수가 3배 이상 늘어난 무장세력으로 발전한 것이다.

중국군에 배속되어 활동하는 과정에서, 대원들 사이에 조선의용대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려는 논의가 일어났다. 조선의용대는

²²⁾ 金榮範, 〈朝鮮義勇隊 研究〉(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 사연구》 2, 1988), 483쪽.

²³⁾ 金榮範, 위의 글, 484쪽.

중국항전의 승리가 조선민족의 독립과 직결된다는 논리하에 중국군과 공동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²⁴⁾ 그렇지만 독자적인 활동영역이 확보된 것은 아니 었고, 중국군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논의에는 일제가 점령한 지역에 한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환경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일제가 점령지역에 한인들을 이주시키면서 화북지역 일대에만도 약 20만에 달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²⁵⁾ 이러한 정보에 의해 조선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진출하여 활동근거지를 마련하고, 거대한 항일무장대오를 건립하여 활동하자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대원들 사이의 논의는 화북진출로 모아졌다. 중경에 있던 대본부 인원을 제외한 의용대 대원 대부분이 이에 동조하였고, 각 전구에 분산되어 있던 대원들은 화북으로 이동하기 위해 낙양으로 집결하였다. 낙양에 집결한 대원들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1941년 3월과 5월에 걸쳐 황하를 건넜다. 이들의 화북진출은 극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중경에 있던 김원봉을 비롯한 대본부인원과 일선공작원을 제외한 대원 약 80%가 이에 참여하였다.26)

이러한 조선의용대 대원들의 화북진출사건은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대원들의 화북진출은 중국 당국에서도 사후에 알았을 정도로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조선의용대를 지원하고 있던 중국 군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자신들이 지원하던 무장세력이 중국공산당 지역인 화북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한국독립운동 무장세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자하였다. 조선의용대의 화북진출을 보고받은 蔣介石은 1941년 10월 30일 중국 군사위원회 참모총장인 何應欽에게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를 동시에 중국 군사위원회에 예속케 하고, 참모총장이 직접 통일, 장악하여 운영하도록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27) 화북으로 진출하지 않고 남아있는 조선의용대는 물론이고, 임시정부의 국군인 한국광복군도 장악하라는 명령이었다. 곧

²⁴⁾ 金榮節, 위의 글, 477쪽.

²⁵⁾ 韓志成,〈目前環境與朝鮮義勇隊今後工作方向〉(《朝鮮義勇隊》 제34기, 1940), 2~ 4~

²⁶⁾ 李庭植, 〈韓人共産主義者와 延安〉(《史叢》8, 1963), 138쪽.

²⁷⁾ 胡春惠 저, 辛勝夏 역,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단국대 출판부, 1979), 147쪽.

바로 광복군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가 내려졌다. 11월 15일 중국 군사위원회 는 광복군의 관할과 행동을 제한하는 〈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을 임시정부 에 요구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관내 주요 무장조직인 광복군과 조선의용대가 중국 군사위원회의 통할을 받게 되었다.

광복군과 조선의용대가 중국 군사위원회의 통할을 받게 되면서, 이들 양 대 무장조직 사이에서는 군사통일이 추진되었다. 군사통일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양대 무장조직을 단일화하려는 중국 군사위원회의 의도가 크게 작 용하였다. 조선의용대측에서는 양대 무장조직을 합병하여 朝鮮民族革命軍을 편성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임시정부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942년 4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조선의용대를 광복군으로 합편함 것"을 결 의하였다. 조선의용대로 하여금 광복군에 편입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에서는 5월 13일 광복군 부사령직을 증설하고. 조선의용대 대장 김 원봉을 부사령으로 선임하면서.28) 조선의용대의 광복군 편입에 대한 정지작 업을 진행하였다.

군사통일 문제가 양측 사이에서 해결되지 못하자. 중국 군사위원회가 개입 하였다. 1942년 5월 15일 중국 군사위원회는 '김원봉을 광복군 부사령으로 파견한다는 것과 조선의용대는 광복군의 제1지대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조선 의용대의 광복군 편입 및 광복군의 개편에 관한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29) 이 로써 임시정부의 의도대로 조선의용대의 광복군 편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편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중국 군사위원회의 명령이 있은 지 두 달 후인 1942년 7월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 제1지대 로 개편한다"는 내용의〈朝鮮義勇隊改編宣言〉을 발표하고, 광복군으로의 편 입을 선언한 것이다.30)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함으로써 1941년 1월 무 정부주의계열의 전지공작대의 편입과 더불어 중국관내에서 활동하던 무장독 립운동 세력이 모두 광복군으로 군사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28)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제75호, 1942년 8월 20일.

^{29)〈}朝鮮義勇隊의 光復軍編入〉(秋憲樹、《資料韓國獨立運動》3), 112\,

^{30)〈}朝鮮義勇隊改編宣言〉(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資料3),523~525\

3) 연합군과의 공동작전

광복군이 창설되어 활동을 시작한 1940년대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독립운동의 객관적 조건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었다. 1937년 중국대륙을 침략한 일제는 戰線을 동남아시아 일대로 확대해가고 있었으며, 1941년 12월에는 미국의 해군기지인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것이다. 미・일간에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즉각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1941년 12월 10일 主席 김구와 외무부장 조소앙 명의로〈大韓民國臨時政府對日宣戰聲明書〉를 발표,31) 임시정부도 일본과 전쟁에 돌입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다.

임시정부의 군사활동 방향도 연합군과의 공동작전으로 설정되었다. 군무부의 군사계획이 "광복군을 확대하여 속히 동맹군과 配合作戰한다"는 전제하에, "태평양 방면에서는 미국과 연계한다"거나, "한국과 일본본토에 지하공작을 진행하며 미국과 배합작전하여 해상으로 조선반도에 진입한다"는 등32)연합군과 연계하여 대일전쟁을 전개한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광복군으로 하여금 연합군과 함께 대일전쟁을 전개하게 함으로써 戰後 연합국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이 임시정부의 戰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군은 당시 일본과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중·영·미 등의 연합군들과 그 절차나 형태는 각기 달랐지만,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활동하였다. 중국군과는 창설 당시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광복군 창설 자체가 중국측의 양해와 협조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광복군은 중국 군사위원회에 사실상 예속되어 중국군과 함께 활동한 것이다.

영국군과도 함께 대일전쟁을 전개하였다. 인도·버마(미얀마)전선에 광복군 공작대원들을 파견하여 영국군과 함께 대일전쟁을 수행한 것이 그것이다. 인 도·버마지역에서는 영국군과 일본군이 대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버마는 연

³¹⁾ 대한매일신보사,《白凡金九全集》5, 102~103쪽.

^{32) 〈}韓國光復軍建軍及作戰計劃〉(《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昻篇 4,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478~482쪽.

합군이 중국에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주요 통로였는데, 일본군이 이를 점령함으로써 수송로가 차단되었다.33) 영국군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임무를 맡아인도·버마지역에서 일본군과 전쟁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국군과의 공동작전은 영국군측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던 영국군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였고, 이를 광복군측에 요청하였다. 광복군에서는 韓志成・文應國 등 영어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작대원 9명을 선발, 1943년 8월 인도 캘커타(Calcutta)로 파견하였다.34) 이를 계기로 광복군은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전선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광복군 공작대원들은 인도주둔 영국군 총사령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4개월 동안 영어와 방송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1944년 초 영국군에 분산 배속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영국군은 임팔(Imphal)전선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고, 띠마플・티딤・비센플 등 각지에서도 계속 전투가 이어졌다. 광복군 공작대원들은 영국과 함께 이러한 전투에 참여하였고, 영국군이 하기 어려운 대적방송・포로심문・적문서번역 등 주로 정보활동을 담당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1945년 초 버마에 대한 총반격작전을 비롯하여, 버마 수도인 랑군(Rangoon, 양곤)을 완전히 탈환하여 일본군을 패퇴시키는 1945년 7월까지 계속되었다. 2년여에 걸쳐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전선에서 대일전쟁을 전개한 것이다.35)

광복군은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와도 합작하여 국내진공작전을 계획 추진하였다.³⁶⁾ OSS와의 합작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려는 광복군측의 의도와 한국인들을 대일전쟁 첩보활동에 이용하려는 미국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루어졌다. 광복군과 OSS의 합작

³³⁾ 당시 중국측에 제공되던 전쟁물자는 주로 버마 남쪽의 랑군 港으로부터 북부의 라시오를 거쳐 중국 昆明으로 전달되었다. 이 통로는 '버마公路'라 하기도하고, 蔣介石을 원조한다는 뜻에서 '援蔣루트'라고도 불렀다.

^{34) 《}독립》 1945년 6월 13일. 〈인도에서 활약하는 조선용사들〉.

³⁵⁾ 韓詩俊, 앞의 책, 266~271쪽.

³⁶⁾ 광복군과 OSS와의 합작훈련에 대해서는 金光載의《韓國光復軍의 活動 研究 - 美 戰略諜報局(OSS)과의 合作訓練을 중심으로-》(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9)라는 상세한 연구가 있다.

은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으로 구체화되었다. 독수리작전이란 광복군 대원들을 선발하여 첩보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을 한반도에 침투시켜 적후방공작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OSS측에서 입안되었다. 그리고 OSS측과 광복군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협의되었고, 1945년 4월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독수리작전이란 명칭하에 광복군과 OSS와의 합작이 실현을 보게 되었고, 5월부터 3개월 과정의 OSS훈련에 들어갔다. OSS훈련은 무전교신과 게릴라 활동을 위한 특수훈련으로 일종의 첩보훈련이었다.

OSS훈련은 두 곳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西安에서 제2지대 대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훈련이 실시되었다. 훈련책임자는 싸전트(Clyde B. Sargent) 대위였고, 제1기생으로 金俊燁・張俊河 등 50명이 선발되어 훈련에 참가하였다. 또 안휘성 立煌에서도 OSS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는 부양에 있던 제3지대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尹永茂・金永逸 등 20여 명이 훈련을 받았다. 훈련책임자는 윔쓰(Clarence N. Weems) 대위였다.

한편 제1기생의 훈련이 8월 4일 완료되자, 서안의 광복군 제2지대는 이들을 국내에 침투시키는 국내진입작전을 추진하였다. 8월 7일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비롯하여 李靑天·李範奭 등 광복군 간부와 OSS측 책임자인 도노반 (William B. Donovan) 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안에서 국내진입작전을 위한 작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도노반 소장은 "오늘부터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이에 적 일본에 항거하는 비밀공작이 시작된다"고 하여,37) 한미간에 공동작전이 실행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OSS대원들의 국내침투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들을 국내에 침투시키기 위한 국내진입작전의 세부적인 계획과 출동준비가 갖추어졌을 바로그 순간에 일제가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일제의 항복소식을 접한 것은 대략8월 9일 경이었다. 일제의 항복으로 국내진입작전이 좌절된 광복군에서는 곧바로 이범석을 책임자로 한 국내정진대를 구성하였다. 국내정진대는 8월 18일 OSS측과 함께 비행기로 국내에 진입,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하였다가 서

³⁷⁾ 金 九, 《백범일지》, 345쪽.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38)

광복군이 중국군·영국군·미국군과 함께 활동한 것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전략이었다.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한민족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일본군과 전면적 전쟁을 수행하거나 일본을 패망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할 때 최선의 전략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대일전쟁을 전개함으로써, 전후에 연합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광복군이중국군을 비롯하여 인도·버마전선에서 영국군과, 그리고 미국의 OSS와 합작하여 공동작전을 추진한 것은 이러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韓詩俊〉

3. 임시정부로의 통일전선 형성

1) 좌익진영의 임시정부 참여

1940년대 중국관내 독립운동전선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성과의 하나는 좌익진영이 임시정부에 참여, 좌우 독립운동세력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조선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좌익진영은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임시정부가 "각 혁명단체와 인민의 합법적 선거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고, 국토와 인민이 없는 상황에서 政權을 행사할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1) 이런 이유로 임시정부에 대해 不關主義 노선을 고수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좌익진영의 세력들이 1942년 임시정부에 참여한 것이다.

좌익진영이 임시정부 참여를 결정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대평양전쟁 발발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주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38) 〈}報告;今番國內進入經過에 關한 件〉(1945년 9월 8일자로 제2지대장 李範奭 이 총사령 李靑天에게 보고한 문건).

¹⁾ 秋憲樹, 《資料韓國獨立運動》 2(연세대 출판부, 1972), 211쪽.

1941년 12월 8일 발발한 미일간의 전쟁은 대일항전을 전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었고, 이를 위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필요성이 절박해진 것이다.

중경에 정착한 후 임시정부가 세력을 결집한 반면, 좌익진영은 그 세력이 분열되었다는 것도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족 진영 세력들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여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확대 강화하고 있었지만, 좌익진영은 그 기초세력인 조선의용대 대원 대부분이 화북으로 이동하여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다.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한다고 하면, 그것은 임시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된 것이다.

중국측의 지원방향이 임시정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도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중국측은 1930년대 이래 金九와 金元鳳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창구를 통해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중국에서 지원창구를 단일화시키고자 하였다. 1941년 중국 외교부장 郭泰祺가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원창구를 임시정부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3)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좌익진영으로 하여금 임시정부에 참여하도록 작용하였다. 좌익진영에서 임시정부 참여를 선도한 것은 조선민족해방동맹이었다. 金星淑이 주도하던 조선민족해방동맹은 1941년 12월 1일 "反日革命力量을 임시정부로 집중시켜 전민족 총단결을 이루자"는 내용의〈擁護韓國臨時政府宣言〉을 발표.4) 임시정부 참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뒤를 이어 조선민족혁명당도 임시정부 참여를 결정하였다.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인 1941년 12월 10일에 개최된 제6차 전당대표대회에서 그 동안 임시정부에 대해 고수해 왔던 不關主義 노선을 포기하고, 임시정부에 참여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5)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임시정부로 결집하자는 것이

²⁾ 朱家驊, 〈나와 韓國과의 關係 概要〉(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6), 625쪽.

³⁾ 韓詩俊, 〈1940년대 전반기 독립운동의 특성〉(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1994), 450쪽.

⁴⁾ 朝鮮民族解放同盟 中央書記局、〈擁護韓國臨時政府宣言〉(素昻文類 610).

그 명분이었다. 그리고 1942년 3·1절을 맞아 발표한〈敬告中國同胞書〉를 통해 "임시정부는 각 혁명집단을 받아들여 임시정부를 조선혁명의 최고기 구로 할 것"과 임시정부에서 이들의 참여에 대한 조처를 강구해 주도록 요 구하였다.6)

이로써 좌익진영의 임시정부 참여문제가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그 절차나 과정에 있어 의견이 같지 않았다. 좌익진영에서는 '先정치통일 後군사통일'을 주장하였고, 임시정부측에서는 '先군사통일 後정치통일'을 주장한 것이다. 통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차이로 좌익진영의 임시정부참여는 난항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42년 7월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합편을 결정함으로써, 군사통일이 먼저 이루어졌다.

군사통일에 이어 좌익진영의 인사들이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치적으로도 통일을 이루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8월 〈임시의정원 의원 선거규정〉을 개정,7〉 좌익진영의 인사들도 의정원 의원에 선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에 의해 10월 20~23일에 걸쳐 의정원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 새로이 23명의 의원이 보선되었는데, 그 중김원봉・金尙德 등 조선민족혁명당 인사 10명을 비롯하여 柳子明 등 조선혁명자연맹 2명, 조선민족해방동맹 2명(朴健雄・金在浩)등 좌익진영의 인사들이의원에 선출된 것이다.8〉이들 좌익진영의 의원들은 10월 25일 개회한 제34차 임시의정원 회의에 참석, 좌우세력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통일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좌우 양진영의 정치통일도 이루어졌다. 그 형식은 좌우 양진영의 각 정당 및 단체들에서 임시의정원 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좌익진영 인사들이 의정원에 참여하면서 의정원 의원의 증강은 물론이고 임시의정원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종래 23명이었던 의원수가 두 배인 46명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의정원의 운영형태

^{5)〈}第六屆代表大會宣言〉(秋憲樹、《資料韓國獨立運動》2), 204~211쪽,

⁶⁾ 秋憲樹,《資料韓國獨立運動》3,110~112\.

⁷⁾ 韓詩俊 편、《大韓民國臨時政府法令集》(국가보훈처、1999)、389~391쪽.

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1975), 963~964쪽.

도 한국독립당의 일당체제에서 양당체제로 변화되었다. 전체 의원 46명 중한국독립당이 29명으로 62%를, 조선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좌익진영과 무소속이 17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⁹⁾ 한국독립당과 좌익진영이 의정원에서양대 세력을 이루면서, 각각 여당과 야당으로 역할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당체제의 성립과 이에 의한 의정원의 운영은 의정원 설립 이래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한국의 정당발달 및 정당정치의 기원을 이룬 것이었다.

2) 좌우연합정부 구성

좌익진영의 임시정부 참여는 그 절차나 과정상에서 보면, 軍(광복군)·黨(임시의정원)·政(임시정부)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942년 7월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합편하였고, 그 해 10월에는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시의정원 의원에선출된 것이다. 군과 당에 이어 좌익진영 인사들이 정부에도 참여,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시정부 조직에 직접 참여하여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게 된 것은 1944년 4월에 개최된 제36차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서였다. 제36차 의정원 회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임시정부의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주석을 비롯한 국무위원의선출이었다. 헌법개정은 1940년 10월에 제정된〈大韓民國臨時約憲〉을 개정하자는 것으로, 좌익진영의 인사들이 의정원에 참여하면서부터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무위원 선출문제는〈임시약헌〉에 의해 선출된 주석과 국무위원의 임기가 3년이었고, 그것이 1943년 10월로 만료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1943년 10월에 개최된 제35차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1942년 좌익진영 인사들이 의정원에 참여한 이래 헌법개정 문제가 좌우 세력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회기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 였다. 결국 35차 의회의 회기를 넘겨서야 의정원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1944

⁹⁾ 韓詩俊、〈重慶時代 臨時政府의 活動〉(《仁荷史學》3, 1995), 391쪽.

년 4월 초 개정 헌법인〈大韓民國臨時憲章〉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1944년 4월 20일 제36차 의회가 소집되었다.

헌법을 개정하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기위한 것이었다. 좌익진영이 참여해 옴에 따라 정부의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좌익진영을 수용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도 작용하였다. 핵심은 주석을 보좌하고 주석 유고시에 그 직권을 대행하기 위해 副主席制를 신설한다는 것, 국무위원 수를 좋전의 6~10인에서 8~14인으로 증원하는 것, 그리고 5개 부서였던 행정부의 조직을 7개 부서로 증설한다는 것 등이었다.10)

이와 같이 정부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과정에서 좌익진영의 인사들이 임시정부 주석단 및 국무위원에 선출,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주석은 종전대로 한국독립당의 김구가, 신설된 부주석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의 金奎植이 선임되었다. 국무위원에도 좌익진영 인사들이 선임되었다. 국무위원은 모두 14명이 선임되었는데, 그 중 한국독립당이 9명(李始榮・曺成煥・黃學秀・趙琬九・車利錫・朴贊翊・趙素昻・金朋濬・安勳)이고, 나머지는 조선민족혁명당 3명(김원봉・成周蹇・張建相), 조선민족해방동맹 1명(김성숙), 무정부주의자총연맹 1명(柳林) 등 좌익진영 인사가 5명이었다.11)

정부의 각 부서에도 좌익진영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종전의 행정부서는 내무·외무·군무·법무·재무의 5부서였는데, 여기에 문화부와 선전부의 2개부서를 증설하고, 좌익진영의 인사들을 부장에 선임한 것이다. 당시 선임된 주석·부주석을 비롯한 행정부서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주 4:金 九 부주4:金奎植

내무부장:申翼熙, 외무부장:趙素昻, 군무부장:金元鳳 법무부장:崔東旿, 재무부장:趙琬九, 선전부장:嚴恒燮

문화부장:崔錫淳

부주석 김규식을 비롯하여 군무부장 김원봉과 문화부장 최석순은 모두 민

^{10)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제81호, 1944년 6월 6일.

¹¹⁾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 1009쪽.

족혁명당 당원이었다. 부주석제는 아마도 민족혁명당의 정부 참여를 위한 정 치적 배려라는 차원에서 신설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좌익진영의 인사 들이 부주석과 정부 부서의 책임자에 선임됨으로써, 임시정부는 좌우연합정 부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정부 부서의 일반 직원들도 좌익진영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새로이 개정된임시현장에 의해 정부의 기구가 확대되었고, 그 내용은 5월 25일〈大韓民國臨時政府暫行中央官制〉로 공포되었다. 이 관제에 따른 당시 임시정부의 직원은 대략 96명 정도였는데, 이 중 좌익진영 정당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모두43명에 이르고 있다.12)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시정부 직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좌익진영의 인사들은 1942년 광복군과 임시의정원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래, 1944년 4월 제36차 의회를 계기로 임시정부의 조직에도 주요 구성원이되었다. 부주석을 비롯하여 국무위원, 행정부서의 책임자에 좌익진영의 지도자들이 임명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좌익진영의 인사들이었다. 좌우익 세력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고, 공동으로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한 것이다.

이러한 좌우연합정부의 구성은 1930년대 이래 독자적인 조직과 세력을 유지하며 활동하던 좌우익 정당 및 단체들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룬 것이었다. 제36차 임시의회 선언에서는 통일을 이룬 임시정부의 성격을 "우리 민족의 각 혁명정당과 사회주의 각 당의 권위있는 지도자들이 연합일치하여 생산한 전민족 통일전선의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13) 그리고 같은 선언에서 "우리들의 임시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일체 반일세력을 통일적으로지도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전민족의 의사와 권력을 대표하게 된 것"이라하여,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 통할할 수 있는 최고기구이자 민족의 대표기구임을 천명하였다. 임시정부가 수립 당시와 같은 위상과권위를 회복한 것이다.

¹²⁾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 1020~1023쪽.

^{13)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제36차 임시의회선언〉(대한매일신보사,《白凡金九全集》 5), 397~398쪽.

3)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와의 통일운동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한 후 임시정부는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와의 통일을 모색하였다. 당시 독립운동전선은 중경의 임시정부와 더불어 延安을 중심으로 한 朝鮮獨立同盟과 朝鮮義勇軍, 그리고 국내의 朝鮮建國同盟이 주요 세력을 형성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이들과의 통일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에서도 독립동맹과는 서신과 대표 파견을 통해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임시정부와 독립동맹은 지역적 기반이나 정치적 이념이 달랐지만, 그 실체를 서로 인정하며 존중하고 있었다. 1941년 10월 연안에서 개최된 東方各民族反파쇼大會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명예주석단에 추대한 것이나, 독립동맹 晉西北分盟 성립대회에서 김구의 초상화를 孫文·蔣介石·毛澤東의 것과 함께 대회장에 내걸었다는 것이¹⁴⁾ 그것의 일단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독립동맹은 임시정부에 대해 대립적·경쟁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강령에 "본 동맹은 조선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지방단체"로 명시한 것이 그것이다.¹⁵⁾ 독립동맹이 자신의 위상을 '하나의 지방단체'로 자임한 것은 중경의 임시정부를 민족운동의 중앙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있다.

그리고 임시정부와 독립동맹 사이에는 지속적인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다. 독립동맹의 간부인 金學武가 중경과 연안을 오가며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독립동맹 위원장 金科奉의 서신연락을 담당하였다고 한다.16) 조직적인 연락체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인편을 통해 상호간에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 중경에 있던 민족혁명당의 김원봉도 연안의 김두봉·武亭과 별도의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고 한다.17)

¹⁴⁾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나남출판. 2001). 154~155쪽.

^{15)〈}華北朝鮮獨立同盟綱領〉(金正明,《朝鮮獨立運動》5), 992~993\.

¹⁶⁾ 韓洪九, 〈華北朝鮮獨立同盟의 조직과 활동〉(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8), 67쪽.

¹⁷⁾ 鄭秉峻, 〈해방 직전 임시정부의 민족통일전선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 주년기념논문집》하, 국가보훈처, 1999), 576쪽.

이러한 상호간의 신뢰와 연락에 기초하여 임시정부는 독립동맹과의 통일을 추진하였다. 좌익세력이 참여한 이후 임시정부가 대내적으로 추진한 과제의 하나는 민족독립운동의 최고 영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일이었고, 이를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확대 개조, 독립운동자대표대회 소집, 5당 통일회의 등의 논의가 바로 그것이었다.18)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연안의 독립동맹, 국내의건국동맹 등과의 통일문제가 제기되었다.

임시정부는 1944년에 들어와 독립동맹과의 통일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44년 3월 임시정부주석 김구가 독립동맹 위원장인 김두봉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 그러한 시도였다. 이 서신에서 "老身이 一次赴延하면 中韓兩方面이 歡迎할 可望이 있겠는지"라 하여,19) 김구는 자신이 직접 연안에 갈 뜻을 밝히고 있다. 김구가연안에 가고자 한 것은 임시정부와 독립동맹의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립동맹측에서도 통일전선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였다. 1944년 4월 임시정부가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였을 때, 독립동맹은 이를 축하하면서 "일체의혁명세력이 모두 완전히 통일되고 단결하여 대규모의 항일투쟁을 전개하게되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다.²⁰⁾ 이것이 김구가 제안한 연안행에 대한 독립동맹측의 화답이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양측이 모두 통일에 대한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1944년 말에 이르면 통일에 대한 논의는 좀더 구체화된 단계로 발전하였던 것 같다. 1944년 10월 16일 김두봉이 김구에게 보낸 서신이 그것을 짐작케 한다. 김두봉은 김구의 연안행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지역·파벌을 불문하고 誠心團結할 것과 서로 연락을 취하여 압록강에서 군대를 조직할 수 있

¹⁸⁾ 鄭秉峻, 위의 글, 563~573쪽.

¹⁹⁾ 당시의 서신은 전하고 있지 않지만, 1948년 2월 김구가 김두봉에게 남북협상을 제의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1944년에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서신의 내용을 회상하고 있다(〈金九 金奎植이 金科奉에게 보낸 서신〉, 대한매일신보사,《白凡金九全集》8, 1999, 721~726쪽).

²⁰⁾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8, 198~199쪽.

다면 자신이 나서서 알선해보겠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²¹⁾ 임시정부의 광복군과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이 압록강에서 만나 군대를 조직하여 국내로 진입하자는 제안이었던 것이다.

논의가 구체화되자 임시정부는 연안으로 대표를 보냈다. 연안에 파견될 인사로는 국무위원 장건상이 선임되었고, 그는 1945년 5월 서안을 거쳐 연안에도착하였다.²²⁾ 장건상은 연안에서 독립동맹 위원장 김두봉을 비롯한 간부들을 만났다. 양측의 제안이나 교섭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장건상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김두봉을 만나 좌우 통일전선을 중경에서 결성하자고 제의했더니 찬성해요. 자기가 중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간부들도 모두 찬성이었어요. 그 때는 일제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을 때였으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뭉쳐 해방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던 때였습니다(李庭植면담, 金學俊 편집 해설,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211쪽).

단편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임시정부와 독립동맹 사이에는 중경에 모여 통일전선문제를 협의하자는 데 합의를 이루었고, 김두봉 자신이 중경으로 가서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경에서의 회의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일제의 패망소식이 먼저 전해진 것이다. 즉 임시정부와 독립동맹이 중경에 모여 회의를 개최한다는데 합의를 이루었지만, 그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연안의 독립동맹과 더불어 임시정부는 국내와도 긴밀한 연계를 추진하고 자 하였다. 1944년 10월 3일 국내비밀공작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석이 주관하는 國內工作委員會를 설치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면,²³⁾ 적어도 임시정부는 국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國內工作員을 파견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白昌燮이 임시정부 요인들의 동의를 얻어 1945년 4월 국내에 잠입하였다는 증언이 있고,²⁴⁾ 文德鴻은 국내공작원으로 파견되었다가 부산에서

²¹⁾ 대한매일신보사.《白凡金九全集》8. 722쪽.

²²⁾ 鄭秉峻, 앞의 글, 578쪽.

^{23) 〈}國內工作委員會設置案〉(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資料 1,527쪽).

²⁴⁾ 鄭秉峻, 앞의 글, 582쪽.

체포되었다고 한다.²⁵⁾ 아직 구체적인 실상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임 시정부에서는 국내와의 연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공작원들을 국내로 파 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다.

임시정부가 국내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임시정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었다. 1944년 8월 呂運亨의 주도로 결성된 朝鮮建國同盟이 그러한 단체였다. 건국동맹은 북만주・북경・연안 등 중국 여러 지역에 연락원들을 파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락원들을 통해 건국동맹은 화북의 독립동맹과 연계를 맺는 한편, 임시정부와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다. 1945년 5월 말 "重慶 臨時政府 요인에게 국내사정을 전달하고 내외가상응하여 協同戰線을 형성할 연락을 하기 위하여 崔謹愚를 파견하였는데"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26) 임시정부와의 연락을 위해 건국동맹은 최근우를 북경에 파견하였지만, 임시정부와의 직접적인 연결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연안의 독립동맹, 국내의 건국동맹과 통일 및 연계를 추진하고자 했던 임시정부의 노력은 일제의 패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유효한 성과를 거두지못하고 말았지만, 이는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통일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1940년대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면서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들이 상호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향후 민족통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요한 민족적 자산이자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韓詩俊〉

²⁵⁾ 鮮于鎮 선생의 증언(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에 국내공작원으로 파견된 사실을 보여주는 文德鴻의 사진이 소장되어 있다).

²⁶⁾ 李萬珪, 《呂運亨先生鬪爭史》(民主文化社, 1946), 173쪽.

찾 아 보 기

$[\neg]$

각단체연합주비위원회 各團體聯合籌備委 員會 274 갑종실업학교 甲種實業學校 37 강덕삼 姜德三 197 강위룡 姜渭龍 361 강주룡 姜周龍 199 강진해 姜振海 343 강창제 姜昌濟 279 〈개정신사규칙〉 〈改正神社規則〉 61 갱신증미계획 更新拯米計劃 75 〈건국강령〉 〈建國綱領〉 $444 \sim 446$ 〈경고중국동포서〉 〈敬告中國同胞書〉 461 경기중학 京畿中學 255 경남적색노동자교육협의회 慶南赤色勞 195 動者教育協議會 경성(고등)공업학교 京城高等(工業)學 校 37 경성광산전문학교 京城鑛山專門學校 경성그룹 京城club 140 경성방직(주) 京城紡織(株) 32, 201 경성제국대학 京城帝國大學 38, 251, 255 경지도 耕地圖 82 계림동지회 鷄林同志會 430, 431 계지호 桂志浩 328 고경흠 高景欽 418 고려공산청년동맹 高麗共産靑年同盟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 高麗共産靑年會 日本部 414

고려회 高麗會 255 고이소 쿠니아키 小磯國昭 82,234 고이허 高而虛 277, 315, 321, 331 고활신 高豁信 277 공동작업반 共同作業班 116~118 **공산**당재건운동 共産黨再建運動 〈공장법〉 〈工場法〉 14.36 《공장신문》 《工場新聞》 195 〈공장취업시간제한령〉 〈工場就業時間制 限令〉 37 공진원 公震遠 275, 295, 344 공출 供出 71,74,81,92,94~97,113 공출사전할당제 供出事前割當制 공출책임제 供出責任制 곽태기 郭泰祺 460 관동군 關東軍 232 관서공명학원 關西共鳴學院 (한국)광복군 (韓國)光復軍 $8 \sim 10$, 255, 287, 295, 296, 298, 301, 303, 345, 366, 392, 394, 395, 435, 446~452, 454, 456~ 459, 464 광복단 光復團 279 광복진선 光復陣線 286~290, 292~ 294, 297, 305 광복진선원동삼당통일대표회의 光復陣 線遠東三黨統一代表會議 436 광산노동자 鑛山勞動者 183 광주서중 光州西中 255 광주학생운동 光州學生運動 3, 5, 250, $254.369 \sim 371.384$ 괴회 槐會 255 교민단 僑民團 $373 \sim 377$ 〈9월테제〉 〈九月These〉 148, 163 9・18小児 九・一八事變 315, 347

권영벽 權永壁 359 〈국가총동원법〉 〈國家總動員法〉 2, 권영태 權榮台 194 19, 22, 41, 42, 47, 48, 100, 235 국내공작위원회 國內工作委員會 권오진 權五鎭 339 467 권중혁 權重赫 국무위원제 國務委員制 441 263 국민개로운동 國民皆勞運動 권태용 權泰鏞 105 263 국민과 國民科 권혁조 權赫朝 52 262, 263 〈국민근로동원령〉 〈國民勤勞動員令〉 〈규례통첩〉 〈規例通牒〉 407 109 근로동원회 勤勞動員會 108 〈국민근로협력령〉 〈國民勤勞協力令〉 〈근로보국대강화철저방침〉 〈勤勞報國隊 106, 108 講和徹底方針〉 106 《국민보》 《國民報》 379, 380 근로보국대 勤勞報國隊 $76,104 \sim 109,$ 국민부 國民府 $306, 309, 310, 313 \sim 315,$ 121 319, 321, 323, 352, 364 〈근로보국대 조직요강〉 〈勤勞報國隊 組 국민의용대 國民義勇隊 50 織要綱〉 105 〈국민정신총동원령〉 〈國民精神總動員 근로보국특별대 勤勞報國特別隊 107. 229 113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國民精神總動 《근세경제사상사》《近世經濟思想史》 員(朝鮮)聯盟 92,220,234 429 《근우》《槿友》 국민정신총동원운동 國民精神總動員運動 189 근우회 槿友會 5, 188, 189, 191, 202 $3,47 \sim 50,60,68,70,104$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강령〉 〈國民 금학귀 琴學胄 362 精神總動員 朝鮮聯盟 綱領〉 기독교반전공작사건 基督敎反戰工作事 〈국민직업능력신고령〉 〈國民職業能力申 件 238 기독교회 基督敎會 125,126 告令〉 100 〈기업정비령〉 〈企業整備令〉 19,32, 〈국민징용령〉 〈國民徵用令〉 41, 409 국민총력근로보국대 國民總力勤勞報國 33, 41 隊 106 길림구국군 吉林救國軍 340 국민총력연맹 國民總力聯盟 234 김갑 金甲 269 국민총력운동 國民總力運動 49, 50, 57, 김강 金剛 301 김광수 金光洙 362 $61,68 \sim 70$ 김광옥 金光玉 국민총력조선연맹 國民總力朝鮮聯盟 318 김광욱 金光旭 234 326 김구 金九 〈국민학교규정〉 〈國民學校規定〉 51 6, 7, 10, 269, 271, 275, 279, 국민회 國民會 $378 \sim 382, 384 \sim 390,$ $281 \sim 285, 287, 289, 292 \sim 294, 298, 305,$ 395, 396 344, 345, 374, 375, 379, 395, 436, 438, 440, 국방부인회 國防婦人會 220 435, 449, 456, 458, 460 9, 279, 280, 300, 301, 군사특파단 軍事特派團 김규식 金奎植 447 군위안부 軍慰安婦 111 387, 463 권동수 權東洙 253 김기전 金起田 141 권수정 權秀貞 336 김단야 金丹冶 217

```
김동산 金東山
             321, 331, 332
                               김인철 金仁哲
                                             301
김동수 金東洙
             451
                               김일수 金佾洙
                                             32
김동원 金東元
             237
                               김장호 金章浩
                                             139
김두봉 金科奉
                               김재선 金在善
             10,278 \sim 280,465 \sim
                                             253
                               김재수 金在洙
 467
                                             425
김두칠 金斗七
             253
                               김재호 金載浩
                                             302
김명돌 金命突
                               김종무 金鍾武
             253
                                             255
김명시 金命時
             223
                               김좌진 金佐鎭
                                             335
김문준 金文準
                               김준연 金俊淵
             421, 423
                                             141, 236
김병규 金炳奎
                               김준엽 金俊燁
             334
                                             458
김병두 金炳斗
             288
                               김진호 金鎭浩
                                             369
                               김창성 金昌成
김보안 金輔(保)安
                277, 315
                                             328
김복녀 金福女
             195
                               김창화 金昌華
                                             276
김복현 金福顯
             263
                               김창환 金昌煥
                                             344
김붕준 金朋濬
             283, 295, 303, 436
                               김창흠 金昌欽
                                             256, 257
김산 金山
                               김철 金澈
          271
                                          269, 271, 282
김상덕 金尚德
                               김철수 金喆壽
             280, 340, 461
                                             225
김상호 金尚昊
             370, 374
                               김학규 金學奎
                                             294, 317, 323, 324, 333,
김성근 金盛槿
             256
                                 366, 447, 450
김성숙 金星淑
             9, 272, 297, 302, 460
                               김학무 金學武
                                             292, 465
김세호 金世浩
             327
                               김현구 金鉉九
                                             371, 373, 377, 397
김영일 金永逸
             458
                               김호영 金浩永
                                             410
김완룡 金完龍
             261
                               김홍서 金弘敍
                                             280
김외득 金外得
                               김활란 金活蘭
             139
                                             211
                               김활석 金活石
                                             7,330 \sim 332
김용제 金龍濟
             419
김용호 金龍浩
             139
김원봉 金元鳳
             7 \sim 9,271 \sim 273,279 \sim
                                           [-]
 282, 285, 288, 289, 291 ~ 293, 296, 297, 301,
 305, 344, 436, 453, 454, 460, 461, 463
                               나월환 羅月煥
                                             276, 287, 303, 451
김원서 金元叙
             304
                               낙양군관학교 洛陽軍官學校
김원식 金元植
             274, 276
                               남대관 南大觀
                                             274, 336, 337
김원용 金元容
                               남만유격대 南滿遊擊隊
             372, 377
                                                   348, 351
김유창 金裕昌
             197
                               남상갑 南相甲
                                             255, 257, 258
김윤걸 金允杰
                               남승룡 南昇龍
                                             236
             330
김윤경 金允經
                               남의사 藍衣社
             237, 239
                                             281
김응기 金應基
             334
                               미나미 지로 南次郎 14,43
김의한 金毅漢
                               남포제련소 南浦製鍊所
             295
김이대 金履大
                               남화한인청년동맹 南華韓人靑年同盟
             314
김이현 金而鉉
             263
                                 303
김인 金仁
          284
                               납코작전 NAPKO作戰
                                                   403
```

내선융화 內鮮融和 43 내선일체 內鮮一體 3,43~46,48,51, 53, 56, 60~64, 67, 68, 224, 258 내지연장주의 內地延長主義 43.50 내지한재구제회 內地旱災救濟會 390 《노동계급》 《勞動階級》 413 〈노동기술통계조사령〉 〈勞動技術統計調 香令〉 101 노동야학 勞動夜學 240,241 노동쟁의 勞動爭議 174 노동조합 勞動組合 135, 151~154, 157, 158, 160, 161, 164~167, 184 노무동원계획 勞務動員計劃 74 〈노무조정령〉 〈勞務調整令〉 106 노백린 盧伯麟 404 노태준 盧泰俊 448 녹아도우선회사 鹿兒島郵船會社 421 농가갱생계획 農家更生計劃 79 농민계몽활동 農民啓蒙活動 146 농민공생조합 農民共生組合 142~144 《농민독본》 《農民讀本》 142.241 농민조합 農民組合 134~136.139. 140, 148, 149, 151, 202, 205, 206, 209 농업공황 農業恐慌 73,145 농업보국운동 農業報國運動 79 농업생산책임제 農業生産責任制 77 〈농업요원설치요강〉 〈農業要員設置要 綱〉 120 **と**を계몽운동 農村啓蒙運動 249 〈농촌근로동원대책요강〉 〈農村勤勞動員 對策要綱〉 121 〈농촌노동력조정요강〉 〈農村勞動力調整 要綱〉 106, 115, 116 농촌대책위원회 農村對策委員會 82 **とを**早はステステンタ 農村婦女指導者 修養所 211 241 농촌순회강연회 農村巡廻講演會 142 농촌재편성정책 農村再編成政策 82,

84

농촌진흥운동 農村振興運動 50,70, 114,151,209,212,228,229,232 농촌진흥회 農村振興會 139,220

[=]

단일당 單一黨 436 단천농민동맹 端川農民同盟 137 단천삼림조합 端川森林組合 208 단합회 團合會 448 당재건운동 黨再建運動 193,196 당취오 唐聚五 316 대구노동자협의회준비회 大邱勞動者協 議會準備會 194 대구사범학교 大邱師範學校 254 대동아공영(권) 大東亞共榮(圈) 43, 232, 260 대륙침략전쟁 大陸侵略戰爭 229 대일전선통일동맹 對日戰線統一同盟 279, 281, 344 대정익찬회 大正翼贊會 49 대조선독립단 大朝鮮獨立團 368, 369, 376, 377 대종교 大倧敎 275, 335 대판소비조합 동대판지부 大阪消費組合 東大阪支部 424 대한독립당 大韓獨立黨 386, 387 〈대한민국건국강령〉 〈大韓民國建國綱 領〉 442, 443 〈대한민국임시약헌〉 〈大韓民國臨時約 憲〉 462 〈대한민국임시약헌개정안〉 〈大韓民國臨 時約憲改正案〉 441 〈대한민국임시정부대일선전성명서〉 〈大 韓民國臨時政府對日宣戰聲明書〉 456 〈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 〈大韓民國臨時 政府宣言〉 442 〈대한민국임시헌장〉 〈大韓民國臨時憲 章〉 441, 442, 463 대한민족통일촉성회 大韓民族統一促成

會 368 대한애국부인회 大韓愛國婦人會 267, 286 대한인국민회 大韓人國民會 286, 377. 380, 448 대한인단합회 大韓人團合會 286 대한인독립단 大韓人獨立團 286 대한인동지회 大韓人同志會 286, 380 대한인회 Korean Association 380 도노반 William B. Donovan 458 도양곡주식회사 道糧穀株式會社 89. 90, 93 도항소개장 渡航紹介場 406 〈독립당촉성운동에 대한 선언〉 〈獨立 黨促成運動에 대한 宣言〉 272 〈독립운동방략〉 〈獨立運動方略〉 436 독서회 讀書會 5, 196, 205, 207, 252, 254 독수리작전 Eagle Project 403, 458 동강 회의 東崗 會議 357 동대판소비조합 東大阪消費組合 424 동래고등보통학교 東萊高等普通學校 251, 253 동래중학 東萊中學 259, 260 동맹휴학 同盟休學 4 동북인민혁명군 東北人民革命軍 207. 221, 307, 330, 343, 346, 350~352, 364 동북항일동맹군 東北抗日同盟軍 352 동북항일연군 東北抗日聯軍 7, 221. $308, 332 \sim 334, 353 \sim 358, 361, 363, 365,$ 367 《동아일보》《東亞日報》 $3,54\sim57,235$ 동아통항조합 東亞通航組合 420 동아통항조합준비회 東亞通航組合準備會 423 동양고무공장 東洋고무工場 198 동우구락부 同友俱樂部 237 동일은행 東一銀行 318 〈동지동포에게 보내는 공개신〉 〈同志同 胞에게 보내는 公開信〉 436

동지미포대표회 同志美布代表會 371, 372 동지회 同志會 371,373~376,378~ 383,390,396,398,399,401,403 등연달 鄧演達 271

[[]

마츠오 시케키 松尾茂樹 414 만보산사건 萬寶山事件 232, 314, 375 만주사변 滿洲事變 1, 127, 276, 278, 284, 377 만주이주사업 滿洲移住事業 만천홍 滿天紅 334 《매일신보》 《每日新報》 $54 \sim 57.261$ 메이데이 May Day 195 메이지대학 明治大學 428 면화증산계획 棉花增産計劃 80 명덕광산 明德鑛山 178 명의택 明義宅 255 명천농민조합 明川農民組合 137 모범부락 模範部落 모택동 毛澤東 465 무정 武亭 465 무정부주의 無政府主義 185, 287, 302 무정부주의자총연맹 無政府主義者總聯 盟 463 문덕홍 文德鴻 467 문맹퇴치운동 文盲退治運動 241 문응국 文應國 457 문자계몽운동 文字啓蒙運動 249 문자보급운동 文字普及運動 241 문한우 文漢雨 263 〈물자통제령〉 〈物資統制令〉 18 〈미곡배급통제에 관한 건〉 〈米穀配給統 制에 關한 건〉 87 미나미 지로 南次郎 233 미량광업소 美良鑛業所 178 미혼진 회의 迷魂陣 會議 민무 閔武 274

민병길 閔丙吉 276, 280, 281, 288 민생단(사건) 民生團(事件) 343 민족대당 民族大黨 267, 268 민족말살정책 民族抹殺政策 50, 61, 65, 68, 69, 151 민족분할통치 民族分割統治 68 225 민족실력양성 民族實力養成 민족유일당 民族唯一黨 249, 277, 308, 310 민족유일당조직동맹 民族唯一黨組織同 310 민족전선 民族戰線 289~294,302,305 민족전선연맹 民族戰線聯盟 453 《민족혁명》 《民族革命》 282 민족혁명당 民族革命黨 $279 \sim 286$, 288~290, 296~298, 300~303, 305 민족협동전선(운동) 民族協同戰線(運動) 267, 294 《민중시보》《民衆時報》 423, 426 민중시보사 民衆時報社 423 민찬호 閔瓚鎬 379, 423

[日]

박건웅 朴建雄 272, 273, 279, 297, 302 박금철 朴金喆 359 박기성 朴基成 451 박길송 朴吉松 361 박달 朴達 359 박사직 朴思稷 141 박성화 朴性和 261 박용만 朴容萬 368, 369, 404 박윤서 朴允瑞 346 박인덕 朴仁德 211 박인진 朴寅鎭 360 박진홍 朴鎭洪 223 박차정 朴次貞 223 박찬익 朴贊翊 270, 299 박창세 朴昌世 $279 \sim 281$ 박치화 朴致化 315 북풍회 北風會

박태을 朴台乙 422 박헌영 朴憲永 140 박호 朴浩 351 박효삼 朴孝三 291 박흥식 朴興植 32 반기독교운동 反基督教運動 반석공농반일의용군 磐石工農反日義勇 軍 348 반제동맹 反帝同盟 5 반제통일전선 反帝統一戰線 350 《반제학생신문》《反帝學生新聞》 252 백운선 白雲善 236 백일규 白一圭 385 백창섭 白昌燮 467 범태평양노동조합 汎太平洋勞動組合 163 변광식 邊光植 253 변낙규 邊洛奎 322 변홍대 卞洪大 195 보성야학 普成夜學 240 〈보안법〉 〈保安法〉 1 보천보 (진입)전투 普天堡 (進入)戰鬪 360, 364 부녀복무단 婦女服務團 223 부녀회 婦女會 212 부락계획 部落計劃 79 부락생산확충계획 部落生産擴充計劃 79, 118 〈부락연맹공동작업반규약〉 〈部落聯盟共 同作業班規約〉 118 부락연맹 部落聯盟 71, 72, 79, 93, 107, 108, 120 부산제2상업학교 釜山第二商業學校 259, 260 부산건설협의회 釜山建設協議會 195 부산 조선방직공장 釜山 造船紡織工場 173 부산중학 釜山中學 259 북륙 北陸 422 226

북호두 회의 北湖頭 會議 357 브나로드 운동 V. Narod 運動 5, 242, 249 〈비상시생활기준양식〉 〈非常時生活基準 樣式〉 49 《빈핍물어》 《貧乏物語》 430

[7]

사충항 史忠恒 342 사회민주주의 社會民主主義 185 사회사정연구회 社會事情研究會 429 산미증식계획 産米增殖計劃 73, 128 산십제사공장 山十製絲工場 197 산업신용조합 産業信用組合 147 삼균주의 三均主義 270, 280, 295, 299, 321, 443 삼운수성회 三雲修成會 142 295, 448 《상해대공보》 《上海大公報》 287 상해애국부인회 上海愛國婦人會 270 상해한인여자청년동맹 上海韓人女子靑年 270 同盟 상해한인청년당 上海韓人靑年黨 270 〈생산증강노무대책강화요강〉〈生産增强 勞務對策强化要綱〉 108 생산확충계획 生産擴充計劃 79 생육사 生育社 311 〈생활필수물자통제령〉 〈生活必須物資統 制令〉 18 서안사변 西安事變 352 서울靑年會 133 서원준 徐元俊 323 선민부 鮮民府 313 설의식 薛義植 236 성윤 誠允 337, 339 성익환 成益煥 255, 258 성자군관학교 星子軍官學校 453 성주식 成周寔 276, 280

성진농민조합재건위원회 城津農民組合再 建委員會 205 성현원 成玄園 301 세계공황 世界恐慌 154, 155, 163, 232 소비조합 消費組合 147 소비조합운동 消費組合運動 〈소작료통제령〉 〈小作料統制令〉 84 소작인상조회 小作人相助會 134 소작인조합 小作人組合 134 소작쟁의 小作爭議 132 손광후 孫廣厚 334 손기정 孫基禎 236 손두환 孫斗煥 288, 301, 304 손문 孫文 465 송병조 宋秉祚 6, 278, 279, 281, 283, 295, 440 송진우 宋鎭禹 236 수리조합반대운동 水利組合反對運動 수양동우회 修養同友會 236,237 〈수출입품등임시조치법〉 〈輸出入品等臨 時措置法〉 18 숭의여학교 崇義女學校 238 시세영 柴世榮 340~342 〈식량관리령〉 〈食糧管理令〉 90~92, 96 식민사관 植民史觀 62 신간회 新幹會 3, 191, 197, 202, 226, $227, 231, 248 \sim 250$ 신기언 申基彦 301,303 신낙균 申樂均 236 신도 神道 61,62,69 《신동아》 《新東亞》 211 신민부 新民府 308 신사참배 神社參拜 3,61,237,238,258 신성학교 信成學校 328 신숙 申肅 274, 337, 340 신악 申岳 297 신영삼 申榮三 301,304

신의주공장노동조합 新義州工場勞動組

476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合 194 신익희 申翼熙 276, 279, 280, 302 신정완 申貞琮 302 신촌농민수양소 新村農民修養所 211 신한독립당 新韓獨立黨 274, 279~ 282, 305 《신한민보》《新韓民報》 385, 448 신한민주당 新韓民主黨 299, 303, 304 신현중 愼弦重 252 신흥우 申興雨 145, 147, 211 실습학교 實習學校 229 실업학교 實業學校 38 심용준 沈龍俊 309 〈10월 서신〉 〈十月 書信〉 163 〈十二月These〉 〈12월테제〉 135, $148, 157 \sim 159, 163, 244, 249$

[0]

아베 노부유키 阿部信行 235 안공근 安恭根 283, 284 안광천 安光泉 272, 273 안송 安松 326 안야산 安也山 337 안우생 安禹生 284 394, 397 안원규 安元奎 안원생 安原生 303 안재환 安在桓 276 아종명 安鍾鳴 339 안창호 安昌浩 $237 \sim 269, 378, 405$ 안춘생 安椿生 448 안태진 安泰振 345 안훈 安勳 274, 436 알선부 斡旋部 142 애국단 愛國團 448 애국반 愛國班 48, 93, 116, 120 애국부인회 愛國婦人會 220 애국일 愛國日 48 야학 夜學 205 야학강습회 夜學講習會 249

양기탁 梁起鐸 280 양기하 梁基瑕 315, 321 양묵 楊墨 283, 295 양봉순 梁鳳順 207 양산농민조합 梁山農民組合 208 양석복 梁錫福 316 양세봉 梁世奉 311, 315, 316, 318, 320, 323 양양농민조합 襄陽農民組合 135 양정우 楊靖宇 330, 332, 351, 353 〈언론기관 통제계획〉 〈言論機關 統制 計劃〉 53 엄수명 嚴洙明 357 엄윤식 嚴允植 221 엄항섭 嚴恒變 283, 284, 295, 436 여운형 呂運亨 468 여자(근로)정신대 女子(勤勞)挺身隊 111, 409 〈여자정신대근무령〉 〈女子挺身隊勤務 令〉 2,235 연병호 延秉昊 276 연합군 聯合軍 459 연합한인위원회 聯合韓人委員會 393 연합회 聯合會 $400 \sim 403$ 연희전문학교 延禧專門學校 211 오광선 吳光宣 275, 338, 344 오성륜 吳成倫 271, 357 오영선 吳永善 269 오의성 吳義成 340, 342, 343 5・1절 五・一節 178 여자기독교청년회 YWCA 145 와세다대학 早稻田大學 429 기독교청년회 YMCA 145, 146 왕덕림 王德林 340 왕동헌 王彤軒 316 왕명 王明 349 왕봉각 王鳳閣 322, 328, 330 왕봉산 王鳳山 362 왕지유 王之維 339 〈외래어표기법〉 〈外來語表記法〉 238

4-11 -1 141-1 From D 4 WEB 010	19 N + E II 105
요녕농민자위단 遼寧農民自衛團 316,	이경선 李景仙 195
317, 321	이경선 李慶善 301
요녕민중구국회 遼寧民衆救國會 316,	이경윤 李景允 207
320~322, 328	이경춘 李慶春 256
요진산 姚震山 340	이계동 李啓東 349
우가키 가즈시케 宇垣一成 13,43,	이관술 李觀述 140,217
232	이광산 李光山 362
《우리동무》 419	이광수 李光洙 237, 257
원산총파업 元山總罷業 163,170	이광제 李光濟 282, 304, 446
유광호 柳光浩 327	이규보 李奎輔 344
유교진흥회 儒教振興會 213	이규성 李奎星 315
유동열 柳東説 277, 280, 294, 298, 303,	이극로 李克魯 239
304, 333, 366, 440, 450	이길용 李吉用 236
유림 柳林 303	이당치국 以黨治國 269,304,310
유일당(운동) 唯一黨(運動) 267~269,	이대위 李大偉 237
278, 294, 304, 305	이돈화 李敦化 141
유자명 柳子明 271, 290, 291, 302, 303,	이동녕 李東寧 268, 269, 271, 283, 295,
461	440
유형기 柳瀅基 237	이립삼 李立三 349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 留滬韓國獨立	이범석 李範蘋 447, 450, 458
運動者同盟 268, 301	이복원 李復源 295
육군특별지원병제도 陸軍特別志願兵制度	이봉창 李奉昌 6,8,278,282,344,427
65	이북만 李北滿 418, 422
윤기섭 尹琦燮 269, 276, 279, 280 윤봉길 尹奉吉 6, 8, 275, 278, 282, 344,	이상범 李象範 236
	이상준 李相俊 357
375, 376	이선룡 李先龍 318 이성환 李晟煥 141
윤봉길의거 尹奉吉義舉 279	
윤세주 尹世柱 280 9 어머 과 차 459	이순금 李順今 195
윤영무 尹永茂 458	이승만 李承晚 285, 368, 369~376,
윤영배 尹永配 327	384, 386, 398, 399, 402~405
윤일파 尹一波 332	이승호 李承浩 255
율전고무공장 파업 栗田고무工場 罷業	이시영 李始榮 283, 295, 440
195	이와타 요시미치 岩田義道 414
〈은행등자금운용령〉 〈銀行等資金運用	이용설 李容卨 237
令》 16	이우정 李字精 340
의무교육제도 義務教育制度 52	이운환 李雲煥 436
의열단 義烈團 267, 271~274, 279, 282,	이웅 李雄 277,311 이외부 本구國 105
288, 305, 344, 453	이원봉 李元鳳 195
의용단 義勇團 267	이원순 李元淳 397
이경산 李景山 280	이유필 李裕弼 278

이윤재 李允宰 237, 239, 243	〈임시농지등관리령〉 〈臨時農地等管理
이을학 李乙學 33	令〉 84
이익봉 李益鳳 291	〈임시자금조정법〉 〈臨時資金調停法〉
이인순 李仁順 207	16
이장녕 李章寧 274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이재유 李載裕 140, 162, 195	$6 \sim 10, 255, 267, 269, 271, 276, 281 \sim 283,$
이정숙 李晶淑 195	285, 287, 288, 290, 295, 298, 300, 301, 304,
이정현 李貞賢 195	305, 320, 366, 373, 375, 387, 390, 391, 394,
이정호 李貞浩 297, 300, 302	397, 400, 403, 435, 436, 438, 439, 440, 441,
이제순 李悌淳 359	446, 448, 455, 461, 464~466, 468
이종건 李鍾建 315	임전보국단 臨戰報國團 234
이종락 李鍾洛 314	임괄전선 Imphal戰線 457
이주하 李舟河 140	
이준식 李俊植 448	[ㅈ]
이진탁 李辰卓 311	
이청천 李靑天 9, 274, 275, 279, 280,	자유노동자 自由勞動者 171
282, 284, 285, 288, 294, 339, 340, 343~345,	잠녀투쟁 潛女鬪爭 216
366, 337, 435, 436, 440, 447, 450, 458	〈잡곡등배급통제규칙〉 〈雜穀等配給統制
이춘암 李春岩 290	規則〉 97
이충모 李忠模 10	장개석 蔣介石 8, 270~272, 275, 281,
이치가와 아사히코 市川朝彦 252	292, 352, 449, 454, 465
이치우 李致雨 253	장건상 張建相 10,300
이하유 李何有 451	장기영 張基永 403
이해평 李海平 451	장덕수 張德秀 225, 236
이현상 李賢相 255, 257, 258	장명도 張明道 326
이형원 李亨遠 252	장사사건 長沙事件 436
이호원 李浩源 315	장세용 張世湧 315
이홍광 李紅光 348, 351	장승언 張承彦 277
이희승 李熙昇 239	장의찬 張宜燦 255
일국일당원칙 一國一黨原則 347	장작림 張作霖 232
일본공산당 日本共産黨 414	장작상 張作相 336
일본반제동맹 日本反帝同盟 417	장준하 張俊河 458
일본차량공장 日本車輛工場 178	장지영 張志映 239
일선동조론 日鮮同祖論 2	장진봉 張珍奉 329
일시귀선증명서제도 一時歸船證明書制	장학량 張學良 270, 316
度 406,407	장한모 張漢模 253
일장기 말소사건(항쟁) 日章旗 抹消事件	재만한인조국광복회 在滿韓人祖國光復會
(抗爭) 54,236	8, 221, 333, 354
《일포시사》 《日布時事》 383	재미한족연합위원회 在美韓族聯合委員會
임병철 林炳哲 236	394, 399, 400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在日本朝鮮勞動總 제2차 세계대전 第二次 世界大戰 232, 同盟 410, 411, 415, 416, 421 260, 305, 383, 446 《적기》 《赤旗》 411 《제주동아통항조합뉴스》 《濟州東亞通航 적색노동조합준비회 赤色勞動組合準備 組合NEWS》 421 제주통항조합준비회 濟州通航組合準備 會 194 적위대 赤衛隊 348 會 421 제주항해조합 濟州航海組合 전국평의회조직준비회 全國評議會組織 準備會 193 조경한 趙擎韓 275, 338, 344, 345, 366 조국광복회 祖國光復會 전략첩보국 OSS; Office of Strategic 220, 222, 308, 354, 356~362, 364 10, 457, 459 Services 전상엽 全相燁 261 조규찬 曺圭讚 252 조기간 趙起栞 전순덕 全順德 195 141 전시계획경제 戰時計劃經濟 조상지 趙尙志 79 349 〈전시교육령〉 〈戰時敎育令〉 52 조선건국동맹 朝鮮建國同盟 9, 465, 전시국책사업 戰時國策事業 48 468 《조선경제통계요람》《朝鮮經濟統計要 전시농업정책 戰時農業政策 81 전시동원정책 戰時動員政策 覽》 111 105 전시협력운동 戰時協力運動 49 조선공산당 朝鮮共産黨 3, 4, 134, 136, 전쟁반대동맹 戰爭反對同盟 149, 156, 202, 216, 226, 346, 347, 429 417 전태화 田泰和 328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朝鮮共産黨 滿洲 절미장려위원회 節米獎勵委員會 92 總局 347 정광호 鄭匡鎬 333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朝鮮共産黨 日本 정노식 鄭魯湜 225 總局 411, 414 정달헌 鄭達憲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회 朝鮮共産黨再 200 정두옥 鄭斗玉 377, 382 建鬪爭協議會 413 정신총동원연맹 精神總動員聯盟 〈조선공업조합령〉 〈造船工業組合令〉 212 정암우 鄭岩又 417 19 정우회 선언 正友會 宣言 226 〈조선교육령〉 〈朝鮮教育令〉 3,50~ 정운준 鄭雲俊 329 52, 55, 57, 233, 258 정의부 正義府 308 조선노농총동맹 朝鮮勞農總同盟 133, 정인과 鄭仁果 237 134 정인승 鄭寅承 조선노동공제회 朝鮮勞動共濟會 239 133. 정일명 鄭日明 280 134 조선노동총동맹 朝鮮勞動總同盟 정주영 鄭周永 134 33 정태진 丁泰鎭 조선노동평양연맹 朝鮮勞動平壤聯盟 239 정태희 鄭泰熙 276 199 정팔선 鄭八仙 280 《조선농민》《朝鮮農民》 142, 202 조선농민사 朝鮮農民社 정평농민동맹 定平農民同盟 203 $140 \sim 143$ 정평농우회 定平農友會 203 $145, 148 \sim 150, 202$ 정평여성동우회 定平女性同友會 203 조선농민사운동 朝鮮農民社運動 125.

126

- 조선농민총동맹 朝鮮農民總同盟 134, 203
- 《조선농업계획요강》 〈朝鮮農業計劃要綱〉 82
- 조선독립동맹 朝鮮獨立同盟 9,302, 465
- 조선무산자진료소 朝鮮無産者診療所 423
- 〈조선문제사견〉 〈朝鮮問題私見〉 42
- 《조선문제에 대한 결의》 〈朝鮮問題에 對한 決議〉 156
- < 조선미곡배급조정령〉 〈朝鮮米穀配給調 환令〉 87
-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 朝鮮米穀市場株 式會社 87,88,90
- 조선미곡주식회사 朝鮮米穀株式會社 89,90
- 〈조선민사령〉 〈朝鮮民事令〉 63
-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朝鮮民事 숙 中 改正의 件〉 59
- 《조선민족전선》 《朝鮮民族戰線》 291
- 조선민족전선연맹 朝鮮民族戰線聯盟 286
- 조선민족전선통일촉성회 朝鮮民族戰線 統一促成會 289
-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 朝鮮民族解放(鬪爭)同盟 9,289,290,297,300,301,359,460,461,463
- 조선민족혁명당 朝鮮民族革命黨 6~ 9,324,333,391,393,443,459~462
- 조선민족혁명통일동맹 朝鮮民族革命統 一同盟 298
-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朝鮮思想犯保 護觀察令〉 1,233,235
- 조선산업경제조사회
 朝鮮産業經濟調査

 會
 14
- 〈조선식량관리령〉 〈朝鮮食糧管理令〉 90
- 조선신궁 朝鮮神宮 61

- 《조선신문》 《朝鮮新聞》 421~423 조선양곡주식회사 朝鮮糧穀株式會社 88.89
- 《조선어사전》 《朝鮮語辭典》 239 조선어학회(사건) 朝鮮語學會(事件) 58,238
- 조선우선 朝鮮郵船 420
- 조선의열단 朝鮮義烈團 279
- 조선의용군 朝鮮義勇軍 9,10,465
- 조선의용대 朝鮮義勇隊 9,290~292, 295~297,300,302,390,391,451~455, 460,462
- 〈조선의용대개편선언〉
 〈朝鮮義勇隊改編

 宣言〉
 455
- 조선의용대후원회 朝鮮義勇隊後援會 392, 395
- 《조선인노무자 내지이입알선요강》 〈朝 鮮人勞務者 內地移入斡旋要綱〉 103
-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 〈朝鮮人 의 氏名에 關한 件〉 59
- 〈조선인학도육군특별지원병제도〉 〈朝鮮 人學徒陸軍特別志願兵制度〉 259, 261
- 《조선일보》 《朝鮮日報》 3,54~57, 236,423
- 조선조침공장 朝鮮釣針工場 179 조선좌익노동조합 朝鮮左翼勞動組合

193

- 〈조선중요광물증산령〉 〈朝鮮重要鑛物增 産令〉 26
- 조선증미계획 朝鮮增米計劃 80
- 조선지방의회 朝鮮地方議會 67
- 《조선직업소개소령》 〈朝鮮職業紹介所 令〉 102
- 조선청년연합회 朝鮮靑年聯合會
 225

 조선청년마르크스주의연구회
 朝鮮靑年

 Marx主義研究會
 428
- 조선청년전시복무단
 朝鮮青年戰時服務

 團
 292
- 조선청년전위동맹 朝鮮靑年前衛同盟 223

조선청년총동맹 朝鮮靑年總同盟 133, 202, 226, 227

〈조선청년특별연성령〉 〈朝鮮靑年特別鍊 成令〉 234

조선총독부농업계획위원회 朝鮮總督府農 業計劃委員會 82

조선총독부시국대책조사회 朝鮮總督府時 局對策調查會 15

조선프롤레타리아문화연맹 朝鮮Proletarian 文化聯盟 418, 419

조선학 朝鮮學 58

 조선학생과학연구회
 朝鮮學生科學研究

 會
 250

조선학생회 朝鮮學生會 249

조선혁명간부학교 朝鮮革命幹部學校 453

조선혁명군 朝鮮革命軍 6,7,277,290,306,309,310,312~314,316~323,326~328,330~334,338,352,356,363~365

조선혁명군정부 朝鮮革命軍政府 323, 327

〈조선혁명군정부 선언서〉 〈朝鮮革命軍 政府 宣言書〉 324

조선혁명당 朝鮮革命黨 6, 8, 9, 270, 274, 277, 278, 282, 285, 288, 294, 303, 305, 306, 310, 311, 313~315, 321, 327, 363, 364, 438~440

조선혁명자연맹 朝鮮革命者聯盟 288, 289

조선협의회 朝鮮協議會 419

조성환 曺成煥 280, 281, 288, 295, 440, 447, 452

조소앙 趙素昻 9,269~271,280~282, 284,294,298,321,435,436,440,443,456

조시원 趙時元 294,436

조완子 趙琬九 269, 271, 279, 281, 283, 299, 436, 440

조용하 趙鏞夏 369

조화선 趙化善 334

좌우합작(운동) 左右合作(運動) 7,267

주가화 朱家驊 449

주기철 朱基徹 238

주낙원 朱樂元 255,258

주미외교위원부 駐美外交委員府 402,

403

주보중 周保中 342,343

주요한 朱耀翰 236

주진 朱鎭 351

주청송 朱靑松 346

중락회 衆樂會 195

중앙고등보통학교 中央高等普通學校

254

〈중요산업통제법〉 〈重要産業統制法〉 14,127

중일전쟁 中日戰爭 7, 42, 53, 62, 73, 98, 126, 127, 140, 176, 217, 229, 232, 284 ~ 287, 289, 290, 292, 305, 378, 379, 389, 390, 395, 435, 446

중한민중동맹단 中韓民衆同盟團 382, 383, 392

중한항일동맹회 中韓抗日同盟會 328 지원병제도 志願兵制度 66,233

38

진선협회 陣線協會 297

진한장 陳翰章 343

직업학교 職業學敎

진흥회 振興會 212

징병(제) 徵兵(制) 52,65~69,111, 224,234,235,261

정용 徵用 2, 104, 224, 235, 261 〈정용령〉 〈徵用令〉 103, 104

징용반대투쟁 徵用反對鬪爭 182

[ㅊ]

차가인동맹 借家人同盟 189 차가조합 借家組合 426 차이석 車利錫 269, 279, 283, 295, 440 참의부 參議府 308 창씨개명(제도) 創氏改名(制度) 3, 59, 60, 63, 69, 233, 234, 258, 429

창유계 暢幽契 138, 139 천도교 天道敎 125 천도교청년당 天道教靑年黨 141 천병일 千炳日 280 철혈단 鐵血團 267 청결일 淸潔日 94 청년당대회 靑年黨大會 226 청년학교 靑年學校 229 청년훈련소 靑年訓鍊所 229 〈청장년국민등록제〉 〈靑壯年國民謄錄 制〉 105 촌락책임공출제 村落責任供出制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 13, 16, 20, 34, 54, 62, 68, 98, 100, 102, 109, 120, 183, 229, 232, 237, 242, 245, 258, 261, 331, 408, 409 총력연맹 總力聯盟 105, 212 총력운동 總力運動 71, 72, 78 최고 崔高 255, 258 《최근농잠법》 《最近農蠶法》 241 최근우 崔謹愚 468 최동오 崔東旿 277, 280, 282, 303, 324, 333, 366, 435, 436, 440 최두선 崔斗善 141 최린 崔麟 140,257 최봉석 崔鳳奭 238 최상림 崔尙林 238 최석순 崔碩淳 280, 463 최선주 崔善宙 379 최승만 崔承萬 236 최악 崔岳 345 최윤구 崔允龜 332, 334 최윤옥 崔允鈺 197 최정수 崔正守 261 최진하 崔鎭河 388 최창익 崔昌益 291, 292, 297 최현배 崔鉉倍 239 최호 崔灝 274 〈출판법〉 〈出判法〉 충남전위대 忠南前衛隊 195

〈치안유지법〉 〈治安維持法〉 1,191, 208,209,262

[7]

 카자마 조키치 風間丈吉
 414

 코르뷰로 高麗國
 346

 코민테른
 Comintern
 135, 140, 148, 156

 157, 160, 163, 186, 217, 244, 249, 346, 347, 356, 363, 405, 422

[≡]

탐공대 探共隊 336 태평양노동조합 太平洋勞動組合 186 태평양전쟁 太平洋戰爭 1,8,9,16,31, 66, 75, 82, 126, 127, 235, 258, 300, 456, 459 《태평양주보》 《太平洋週報 Korean Pacific Weekly 380 태행산 유격대 太行山 遊擊隊 451 토요계 土曜系 226 토지개량사업 土地改量事業 74.76 통일전선운동 統一戰線運動 통혼정책 通婚政策 64,65

[亚]

파업(투쟁) 罷業(鬪爭) 168~170,172, 196,200 평양고등보통학교 平壤高等普通學校 251,253 평양고무공업동업회 平壤고무工業同業會 198 평양고무공장 平壤고무工場 173,200 평양고무공장 총파업 平壤고무工場 總罷業 197,198 평양제사공장 平壤製絲工場 178 프로핀테른 Profintern 157,158,163, 186,410,412

[ㅎ]

하리회의 河里會議 357 하상조 河上肇 429, 430 하유원 河有元 248 하응흠 何應欽 449, 454 학도근로대 學徒勤勞隊 111 학도근로보국대 學徒勤勞報國隊 409 학도대 學徒隊 52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 〈學徒戰時 動員體制確立要綱〉 258 학도지원병제도 學徒志願兵制度 2 학술강습회 學術講習會 249 한검추 韓劍秋 326, 328, 332 〈한국광복군선언문〉 〈韓國光復軍宣言 文〉 450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 〈韓國光復軍 編練計劃大綱〉 449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 〈韓國光復軍 行動九個準繩〉 455 한국광복동지회 韓國光復同志會 274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韓國光復運動 7, 285, 435 團體聯合會 한국국민당 韓國國民黨 6, 8, 280, 28 2~284, 286, 294, 305, 438, 440, 443 한국국민당청년단 韓國國民黨靑年團 284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韓國對日戰線統 一同盟 273, 274, 288, 386, 387 한국독립군 韓國獨立軍 6, 275, 276, 280, 307, 335, 337~345, 364 한국독립당 韓國獨立黨 6, 8, 268~ 271, 274, 275, 278 ~ 283, 285, 294 ~ 296, 298, 299, 301, 303~306, 335, 336, 338, 340, 364, 435, 438~440, 442, 443, 437, 462 한국독립당정부 韓國獨立黨政府 269 한국민족혁명당 韓國民族革命黨 223 한국유일독립당촉성회 韓國唯一獨立黨 促成會 272

한국청년군사간부 특별훈련반 韓國靑年 軍事幹部 特別訓練班 344 한국청년전지공작대 韓國靑年戰地工作 隊 451 한국혁명당 韓國革命黨 276, 277 《한글工夫》 243 〈한글맞춤法統一案〉 238 《하글原本》 242 한길수 韓吉洙 377, 382, 383, 392, 398 한동정 韓東正 254 한병순 韓秉珣 221 한봉준 韓奉俊 328 한빈 韓斌 290, 292, 297, 300, 302 한영호 韓永浩 338 한인공동회 韓人共同會 384, 385 한인성 韓寅誠 207 한인애국단 韓人愛國團 270, 282, 286, 375 한인연합(협의)회 韓人聯合(協議)會 376, 386 한인위원회 韓人委員會 한인자치회 韓人自治會 370 한인협회 韓人協會 369, 370 《한인협회공보》《韓人協會公報》 370 한일래 韓一來 273, 279, 291 한족자치연합회 韓族自治聯合會 275. 306, 335 한족총(자치)연합회 韓族總(自治)聯合會 311, 335 364 한중연합군 韓中聯合軍 449 한지성 韓志成 457 《한청》《韓靑》 284 한호 韓浩 351 함흥학생사건 咸興學生事件 항일민족혁명당 抗日民族革命黨 356 항일의용군 抗日義勇軍 350 해녀(어업)조합 海女(漁業)組合 214 ~ 216 해외한족대회 海外韓族大會 397, 398, $400 \sim 402$

484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허균 許均 195 허정숙 許貞淑 223, 292 허형식 許亨植 349 혁명적 노동조합조직운동 革命的 勞動 〈황국신민서사〉 〈皇國臣民誓詞〉 組合組織運動 193 현순 玄楯 374 현익철 玄益哲 277, 309, 314, 436 현정경 玄正卿 277 현진건 玄鎭健 236 현하죽 玄河竹 278 협동전선 協同戰線 468 협동조합 協同組合 147 《협의회보》 《協議會報》 376 호종남 胡宗南 451 홍건표 洪建杓 255, 257, 258 홍구공원 虹口公園 287 홍군 紅軍 349 홍진 洪震 276, 280~282, 284, 288, 294, 298, 303, 304, 338, 345, 435, 436, 440 홍춘수 洪春秀 334 홍효민 洪曉民 418 화북조선혁명군정학교 華北朝鮮革命軍政 學校 223 화요계 火曜系 226

화흥중학 化興中學 327 황국농민도 皇國農民道 82 황국사관 皇國史觀 62 3. 48, 61, 233, 234 황(국신)민화(운동) 皇(國臣)民化(運動) 45, 51, 104, 234, 238 황민화교육 皇民化敎育 258 황민화정책 皇民化政策 56 황애덕 黃愛德 211 황포군관학교 黃埔軍官學校 271~273, 447, 453 황학금산 黃鶴金山 179 황학수 黃學秀 274, 452 〈회사령〉 〈會社令〉 167 후창광산 厚昌鑛山 178 흑백당 黑白黨 255~257, 259 흑색공포단 黑色恐怖團 303 흥남 비료공장 興南 肥料工場 181 흥남제련소 興南製鍊所 174 흥남조선질소비료공장 興南朝鮮窒素肥 料工場 127 흥사단 與土團 237

집 필 자

개	<u>\$</u>	한시준
	I.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2.	병참기지화정책 ····································	최유리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2. 3. 4.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학생운동	김경일 강정숙 신재홍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2. 3.	중국관내 독립운동정당의 활동 만주지역 독립군의 무장투쟁 미주·일본지역의 독립운동	장세윤

2)	일본지역의	내 민족운동		김	Ó,	Į	듹
----	-------	--------	--	---	----	---	---

IV.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 학	한시	군
---------------------	----	---

- 2.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한시준
- 3. 임시정부로의 통일전선 형성 ……… 한시준

한 국 사

50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2001년 12월 23일
 인쇄

 2001년 12월 27일
 발행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2

인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58

전화 02-3785-2213

판매처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전화 02-734-6818